

20
24

부패·공익신고 및 보상 사례집

제23집



일러두기

『2024년 부패·공익침해 신고 및 보상 사례집』은 2024년도에 처리한 부패·공익침해행위 신고 처리 및 신고자에게 지급한 보상·포상·구조금 지급 등의 주요 사례를 모은 것입니다.

본 사례집은 국민권익위원회에 부패·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하면 어떤 절차에 의해 처리되고, 그 처리 결과는 무엇인지, 그리고 신고자에게 주어지는 보상이나 포상 규모 등은 얼마나 되는지 등을 쉽게 알 수 있도록 구체적 사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본 사례집은 공직자에게 동일·유사한 부패·공익침해행위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는데 유용한 지침이 되고, 국민에게는 부패·공익침해 행위 신고 및 예방의 중요성을 되새겨 보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본 사례집에 수록된 일부 사례는 관계 기관에서 현재 감사·수사·조사 또는 소송 등이 진행 중이므로, 최종 확정되기 전까지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피신고자 등을 익명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제1장

부패 행위 신고사건



1 2024년 부패행위 신고사건



1. 관급공사 현장의 부패행위 10
2. 교육지원청 공무원의 시설부대비 유용 11
3. 연구용역 불법 하도급 관련 부패행위 12
4. 노동조합 비전임자 관련 부당노동행위 13
5. 노인복지사업 시행 관련 부패행위 14
6. 연구개발사업 시행 시 예산낭비 등 부패행위 15
7. 공직유관단체 추진사업 관련 인건비 부정수급 등 16
8. 관급자재 납품업체의 직접생산의무 위반 17

2 신고사건 처리결과 추록



9. 전문의시험 응시자격 취득 관련 부패행위 20
10. 공공기관 의무 구매제도를 악용한 허위계약 등 21
11. 장애인 프로그램 개발사업비 횡령 등 부패행위 22
12. 공사 감독의 허위 준공처리 등 부패행위 23
13. 국립대학교 단과대학장의 학교발전기금 사용 관련 부패행위 24
14. 중학교 현장체험학습 용역계약 관련 부패행위 25

제2장

공공재정 지급금 부정수급 신고사건



1 2024년 공공재정 지급금 부정수급 신고사건



1. 군농산물 연중유통체계 구축사업 보조금 부정수급 30
2. 실업급여 부정수급 31
3. 전기자동차 보조금 부정수급 32
4. 요양급여비용 부정수급 33
5. 휴업급여 부정수급 34
6. 브랜드택시 사업 재정지원금 부정수급 35
7. 폐업 소상공인 재취업교육 사업비 편취 36
8. 지역아동센터 보조금 부정수급 37
9.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38

Contents

제2장

공공재정 지급금 부정수급 신고사건

10.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부정수급	39
11. 기초생활보장급여 및 한부모가족 지원금 부정수급	40
12. 장기요양급여비용 부정수급	41
13.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급	42
14.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지원금 부정수급	43
15. 청년창업지원금 부정수급	44
16. AI 살처분 보상금 부정수급	45
17. 환경개선사업 보조금 부정수급	46
18.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47
19. 일학습병행제 훈련지원금 부정수급	48

2 신고사건 처리결과 추록



20. 장애인 근로지원인 보조금 부정수급	50
21. 청소년쉼터 보조금 부정수급	51
22. 장애인고용장려금 부정수급	52
23. 농업보조금 부정수급	53
24. 스마트공장구축사업 지원금 부정수급	54
25. 택시회사 불법 운영 및 택시 감차보상 지원금 등 부정수급	55
26.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56
27. 창업지원금 부정수급	57

제3장

공익침해 행위 신고사건

1 2024년 공익침해 행위 신고 사건



1. 개발제한구역 무단 용도변경	62
2. 사업장의 4대 보험 신고의무 위반	63
3. 국가 기술 자격증 무단 대여 등	64
4. 광고용 전화번호 미등록 대부중개업자 광고	65
5. 다중이용시설 안전시설기준 위반	66
6. 국유재산 무단 사용	67
7.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한 취득세 중과분 탈루 등	68
8. 지방하천 가설교량 무단 설치	69

제3장

공익침해
행위
신고사건

9. 학원 교습비 허위 게시	70
10. 식품접객업자 준수사항 위반	71
11. 노래방업자의 주류판매 및接客행위 알선	72
12. 간호조무사의 의료행위 및 대리수술	73
13. 약사면허 대여 등	74
14. 당직 의사 없는 입원실 운영 등	75
15. 장애인 정서적 학대 및 사회복지사업 보조금 부정수급	76
16. 사업장 폐기물 무단 매립	77
17. 의료기관에 대한 부당한 경제적 이익 중개 등	78
18. 식품제조 가공 시 배합비율 위반	79
19.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80
20. 무허가 컨테이너 적치 등 건축법 위반	81

2 — 신고사건 처리결과 추록



21. 사용자의 직장 내 괴롭힘	84
22. 「산업안전보건법」 등 위반	85
23. 간호사 불법 의료행위 등	86
24. 입찰 담합 관련 부당 공동행위	87
25.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등	88

제4장

신고자
보상·포상·
구조

1 — 부패신고자 보상·포상·구조



1. 「두루누리지원금 부정수급 신고 사건」 관련 보상금 신청(인용)	92
2. 「스마트공장 구축사업비 등 부정수급 신고 사건」 관련 보상금 신청(인용)	93
3.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신고 사건」 관련 보상금 신청(인용)	94
4. 「노인취업지원센터 지원금 부정수급 신고 사건」 관련 보상금 신청(인용)	95
5.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지원금 부정수급 신고 사건」 관련 보상금 신청(인용)	96
6. 「교육환경개선사업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사건」 관련 보상금 신청(기각)	97
7.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신고 사건」 관련 보상금 신청(인용)	98
8. 「공무원 유족연금 부정수급 신고 사건」 관련 보상금 신청(인용)	99

제4장

신고자 보상·포상· 구조

- 9.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 보조금 편취 신고 사건」 관련 보상금 신청(인용) ... 100
- 10. 「한부모가족지원금 등 부정수급 신고 사건」 관련 보상금 신청(인용) ...101
- 11.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사건」 관련 보상금 신청(인용)102
- 12. 「아동복지시설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사건」 관련 구조금 신청(인용) ...103
- 13. 「관급 도로공사 부패행위 신고 사건」 관련 보상금 신청(인용)104

2 — 공익신고자 보상·포상·구조



- 14. 「미허가 의료기기 제조 및 판매업체 신고 사건」 관련 보상금 신청(인용) ... 106
- 15.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비용 부정수급 신고 사건」 관련 보상금 신청(인용).....107
- 16. 「공공기관의 회계비리 등 신고 사건」 관련 구조금 신청(추가지급, 인용)..... 108
- 17. 「공공기관 출자기업 불량건축자재사용 신고 사건」 관련 구조금 신청(인용) ...109
- 18. 「특수관계인 회사에 대한 부당지원 신고 사건」 관련 보상금 신청(인용) ... 110
- 19. 「대지급금 부적정 지급 신고 사건」 관련 보상금 신청(인용)111
- 20. 「전기공사업법 위반 신고 사건」 관련 보상금 신청(인용)112

제5장

참고 자료

- 1. 부패·공익신고 제도의 이해116
- 2. 부패·공익신고자 보호제도 및 보상제도120
- [붙임]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 목록124



제 1 장

부패행위 신고사건



1. 2024년 부패행위 신고사건
2. 신고사건 처리결과 추록



2024
부패·공익신고 및 보상 사례집

Anti-Corruption & Civil Rights Commission

제1장
부패행위 신고사건

1

2024년 부패행위 신고사건

01

관급공사 현장의 부패행위

1분과위원회(2024. 3. 4.) | 심사보호국장



1 신고내용

피신고자들은 재해예방공사 현장소장 및 ○○면 이장으로서, 공모하여 재해예방공사 현장에서 공사 관급자재를 허가없이 가져가고,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하여 절취 또는 횡령한 혐의

2 검토결과

경찰청에 이첩

3 이첩사유

피신고자들에 대한 절도, 횡령 혐의에 대하여 수사가 필요함

4 처리결과

경찰청: 피신고자들에 대한 혐의를 인정하여 구약식 처분

※ 통보일자: 2024. 6. 3.

5 적용법령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이라 함) 제2조 (정의), 제59조(신고내용의 확인 및 이첩)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02

교육지원청 공무원의 시설부대비 유용

1분과위원회(2024. 4. 8.) | 심사보호국장



1

부패행위 신고 사례

1 신고내용

피신고자들은 교육지원청의 지출담당자로서, 안전용품 명목으로 규정에 맞는 안전복과 안전화가 아니라 고가의 유명 스포츠 브랜드 의류와 신발을 구입하여 시설부대비를 유용한 혐의

2 검토결과

○○교육청에 이첩

3 이첩사유

고가의 등산용품 등의 구매를 금지한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시설부대비를 부정적으로 집행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대한 감사가 필요함

4 처리결과

○○교육청: 안전화 인증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등 세출예산 집행기준을 준수하지 않았으며, 안전복 구매시 조달청을 통한 우선구매를 검토하지 않는 등 부적절한 예산집행이 확인되어 지출담당자 등 경고 4명

※ 통보일자: 2024. 6. 27.

5 적용법령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정의), 제59조(신고의 처리)

03

연구용역 불법 하도급 관련 부패행위

1분과위원회(2024. 5. 13.) | 심사보호국장



1 신고내용

피신고자 1이 발주한 '○○용역'을 수급받은 피신고자 2는 피신고자 3에게 위 용역을 불법으로 하도급 하였고, 그 대가로 약 6천만원 상당의 금전적 이익을 취득한 혐의

3 검토결과

○○부에 이첩

2 이첩사유

입찰공고 및 계약서상에 하도급을 금지토록 되어 있음에도 피신고자 2는 피신고자 3과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이에 대한 감사가 필요함

4 처결결과

○○부: 용역 불법 하도급 사실을 확인하여 기관 경고 및 관련자 경고 등 처분하고, 용역 산출물 검사업무 소홀을 확인하여 관련자 '주의' 처분

※ 통보일자: 2024. 10. 16.

5 적용법령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정의), 제59조(신고내용의 확인 및 이첩)

04

노동조합 비전임자 관련 부당노동행위

1분과위원회(2024. 5. 27.) | 심사보호국장



1

부패행위 신고 시건

1 신고내용

피신고자 1,2는 ○○공단: (신고내용에 2번, 처리결과에 1번) 이사장, 업무담당자이고, 피신고자 3,4,5는 ○○공단 노동조합 비전임자들로서, 피신고자 3, 4, 5는 노조 전임자 1명의 부담분을 파트타임 명목으로 1/2씩 나누어 실제로는 2인이 모두 노조 전임자의 혜택을 누리고, 노동조합 사무실에서 전일 근무를 하고 업무를 하지 않았음에도 피신고자 1, 2는 급여를 지급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한 혐의

2 검토결과

○○부에 이첩

3 이첩사유

피신고자 3, 4, 5가 단체협약 및 사용자의 동의를 통하여 면제받은 근로시간은 단체협약에서 정한 연간 1,000시간을 모두 초과하였고, 피신고자 1, 2는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초과하여 급여를 지급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조사의 필요성이 있음

4 처리결과

○○부: ○○공단이 노동조합 비전임자에게 연간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초과하여 급여를 지급한 것이 확인되어 69,947,591원 환수토록 시정지시

5 적용법령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정의), 제59조(신고내용의 확인 및 이첩)

노인복지사업 시행 관련 부패행위

1분과위원회(2024. 7. 8.) | 심사보호국장



1 신고내용

피신고자들은 2021년 발주한 노인복지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하도급률 미준수, 분리발주 위반 등을 목인 내지 승인한 혐의가 있음

*사업 종류: 1. ○○3가 경로당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 1), 2. ○○2동 경로당 시설개선공사 (이 사건 공사 2), 3. ○○노인종합복지관 냉난방기 교체공사(이 사건 공사 3)

2 검토결과

○○시에 이첩

3 이첩사유

이 사건 공사 1의 도급사에서 하도급한 비율이 법적 비율에 미달함에도 피신고자 1, 2가 이를 승인했고, 이 사건 공사 3의 냉난방기 교체는 당초 단일공사로 사업계획을 확정하였음에도 피신고자 4가 객관적 사유 없이 자신의 전결로 공사량을 분할 발주 계약한 사실이 확인되어 이에 대한 조사의 필요성이 있음

4 처결결과

○○시: 수급인(도급자)의 하도급률 허위 통보 및 감리자와 감독공무원의 검토·확인 소홀, 분할 발주 계획 수립과정에서 사무전결규정 미준수 등이 확인되어 통보 4건, 주의요구 3건

5 적용법령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정의), 제59조(신고내용의 확인 및 이첩)

06

연구개발사업 시행 시 예산낭비 등 부패행위

1분과위원회(2024. 8. 12.) | 심사보호국장



1

부패행위 신고 사례

1 신고내용

피신고자는 ○○연구소장으로, 국가계약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법무법인과 수의계약을 체결한 의혹, 복구공사 관련 손해배상 청구권을 소멸시효 기간 내 행사하지 않아 공공기관에 손해를 끼친 혐의가 있음

2 검토결과

○○부에 이첩

3 이첩사유

계약법령을 위반한 수의계약 체결, 소멸시효기간 내 복구비용 미청구 혐의 등에 대한 감사 및 후속 조치의 필요성이 있음

4 처리결과

○○부: 특정 법무법인과 수의계약 부적정 체결이 확인되어 기관 주의 및 관련 규정 정비방안 마련을 통보하고 손해배상 소송 관련 채권행사 업무 소홀 및 일상감사 규정 미준수로 관련자 경고 및 기관 주의

※ 통보일자: 2024. 10. 28.

5 적용법령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정의), 제59조(신고내용의 확인 및 이첩)

07

공직유관단체 추진사업 관련 인건비 부정수급 등

1분과위원회(2024. 8. 12.) | 심사보호국장



1 신고내용

○○진흥원 임직원인 피신고자1 내지 4는 ○○진흥원의 ‘디지털커머스 사업’ 및 ‘디지털 스튜디오 사업’을 담당하면서 위 사업의 협업(용역)기관 ○○미디어의 임직원인 피신고자5 내지 6이 인건비를 허위 청구하거나 상주 전담인력을 다른 용역사업에 투입하고 과업수행을 불성실하게 수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묵인한 혐의가 있음

2 검토결과

○○도, ○○센터에 이첩

3 이첩사유

‘디지털커머스 사업’과 ‘디지털 스튜디오 사업’ 관련 허위로 인건비를 청구한 사실 등을 확인하였으며, 피신고자 1 내지 4는 이와 같은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미조치하고 은폐하려 한 사실을 확인하여 감사 및 후속 조치의 필요성이 있음

4 처리결과

○○센터: 사업 운영인력을 임의로 변경하여 운영하고, 전담인력을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등 부정행위가 확인되어 43백만원 환수조치 및 담당자 주의 및 기관 경고조치
- ○○도 조사 진행중

5 적용법령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정의), 제59조(신고내용의 확인 및 이첩)

관급자재 납품업체의 직접생산이무 위반

1분과위원회(2024. 8. 26.) | 심사보호국장



1

부패행위 신고 사례

1 신고내용

피신고자는 지오셀* 납품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직접 생산하여 납품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도 ○○군과 직접생산한 지오셀을 납품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수의계약을 체결한 후 지오셀 완제품 생산업체로부터 구매한 지오셀을 납품한 혐의가 있음

*연약지반 보강에 사용되는 토목용 보강재

2 검토결과

경찰청에 이첩

3 이첩사유

직접 생산품 납품 조건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실, 지오셀 완제품 생산업체가 피신고자에게 지오셀을 납품한 시기·수량과 피신고자가 ○○군에 지오셀을 납품한 시기·수량이 상당부분 일치하는 사실, ○○군의 직접 생산 점검 시 지오셀을 제조하지 못한 사실 등을 확인하여 이에 대한 수사의 필요성이 있음

4 처리결과

경찰청: 피신고자는 지오셀을 직접생산하여 납품하는 조건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한 뒤, 지오셀을 타업체로부터 납품받아 이를 그대로 ○○군에 재납품하는 방법으로 그 대금 약 9억 9,000만원 상당을 편취하여 검찰 송치

※ 통보일자: 2025. 4. 2

5 적용법령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정의), 제59조(신고내용의 확인 및 이첩)



2024
부패·공익신고 및 보상 사례집

Anti-Corruption & Civil Rights Commission

제1장
부패행위 신고사건

2

신고사건 처리결과 추록

전문의시험 응시자격 취득 관련 부패행위

1분과위원회(2022. 1. 24.) | 심사보호국장



1 신고내용

피신고자는 2019. 1.경 실시하는 전문의 자격시험을 앞두고 시험응시 필수조건인 피신고자 명의의 주저자 논문을 제출하기 위해 신고자에게 논문 대필을 강요, 작성하게 함으로써 응시자격을 취득한 혐의가 있음

2 검토결과

경찰청에 이첩

3 이첩사유

의혹 논문이 2018. 12. ○○학회의 학회지에 게시된 점, 메신저 대화와 녹취파일상에 피신고자가 논문을 30~40% 정도만 작성하였다는 내용 및 신고자가 논문 최종본을 정리하여 피신고자에게 발송한 점 등 확인되어 수사의 필요성이 있음

4 처리결과

경찰청: 신고자에게 논문의 자료 분석, 내용을 완성하는 일의 대부분을 맡기고 저자의 자격을 부여하지 않은 채 제출하여 전문의 자격시험에 응시·합격한 것은 위계로써 논문 심사 담당자의 업무를 방해한 죄에 해당하므로 검찰 송치

※ 통보일자: 2024. 3. 27.

5 적용법령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정의), 제59조(신고내용의 확인 및 이첩),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10

공공기관 의무 구매제도를 악용한 허위계약 등

1분과위원회(2022. 11. 7.) | 심사보호국장



1

부패행위 신고 사례

1 신고내용

피신고자는 '20. 2월 ~ '22년 초까지 사회적 기업 공공구매 의무 구매비율(전체 구매액 3%)을 달성하기 위해 사회적 기업이 아닌 업체가 명의만 빌려 납품하는 것을 알면서도 묵인한 혐의가 있음

2 검토결과

○○부에 이첩

3 이첩사유

한국○○ 임직원들의 계약관련 법령, 공사지침 등을 위반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의 필요성이 있음

4 처리결과

○○부: 한국○○에서 자체 조사 중이던 사안과 위원회 신고내용을 병합 조사한 결과, 회사소유의 물품으로 사적이익을 취한 사실 등을 확인하여 주의(18명) 조치

※ 통보일자: 2024. 7. 19.

5 적용법령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정의), 제59조(신고내용의 확인 및 이첩)

장애인 프로그램 개발사업비 횡령 등 부패행위

1분과위원회(2022. 12. 5.) | 심사보호국장



1 신고내용

피신고자 1은 2020년 ○○교육원에서 지원하는 장애인프로그램개발사업을 하면서 연구보조원의 자격기준에 미달하는 자신의 아들을 연구보조원으로 허위 등록하고 각종 회의참석자 명부 등을 조작하여 사업비를 횡령한 혐의가 있음

2 검토결과

경찰청에 이첩

3 이첩사유

피신고자 1은 위 사업의 연구보조원으로 피신고자 2를 허위 등록하여 인건비 등을 부당 집행한 사실 확인, 그 외 타 연구원들을 각종 회의 참석자명부에 허위 기재하고 해피머니상품권을 지급한 후 되돌려 받은 사실 등 확인하여 수사의 필요성 있음

4 처리결과

경찰청: 피신고자 1은 피신고자 2가 연구보조원 자격이 없는 것을 알면서도 채용하여 인건비, 출장여비 등 명목으로 사업비를 편취하였고, 동 사업비에서 구입한 해피머니상품권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등 혐의를 인정하여 송치함

※ 통보일자: 2024. 4. 24.

5 적용법령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정의), 제59조(신고내용의 확인 및 이첩),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공사 감독의 허위 준공처리 등 부패행위

1분과위원회(2023. 5. 15.) | 심사보호국장



1

부패행위 신고 사례

1 신고내용

- 피신고자는 '○○군 ○○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의 토목·건축공사의 감독으로서, ○○개발(주) 등에서 공사 계약기간 내에 토목·건축공사를 완공시키지 못하였음에도 준공이 완료된 것처럼 '준공검사 감독보고서'와 '준공검사 조서'를 작성하였고, 위 지사의 계약담당자가 준공금 약 8억원을 집행토록 함으로써 위 지사에 해당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지출업무를 방해한 혐의가 있음
- 피신고자는 위 건축·토목공사가 준공되어 준공금을 지급한 것처럼 '재무회계관리시스템'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지사의 지역개발지표 점수를 상승시켜 ○○공사 ○○지역본부의 "지사(장) 및 부(장) 내부경영성과 평가결과" 에서 S등급을 받도록 하는 등 '내부 경영 성과평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가 있음

2 검토결과

경찰청에 이첩

3 이첩사유

피신고자는 위 업체들이 담당한 토목공사 등이 준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준공금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하였고, 위 공사대금이 ○○공사 △△지사에서 집행된 사실도 확인되며 피신고자가 작성한 준공 관련 서류들이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고, 준공금 지급으로 △△지사가 ○○공사 '내부 경영 성과평가'에서 S 등급을 받은 사실 등이 확인되어 수사의 필요성이 있음

4 처리결과

경찰청: 피신고자에 대하여 21억 원 상당의 손해를 가한 혐의 등이 인정되어 기소의견 송치

※ 통보일자: 2024. 4. 24.

5 적용법령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정의), 제59조(신고내용의 확인 및 이첩)

13

국립대학교 단과대학장의 학교발전기금 사용 관련 부패행위

1분과위원회(2023. 8. 21.) | 심사보호국장



1 신고내용

피신고자는 이 사건 간호대학의 ‘교수회의’ 등에서 ‘2022년도 발전기금’의 사용과 관련하여 승인·결정된 사항과 다르게 사용대상, 증빙 방법 등을 독단적으로 결정하고 사용한 혐의가 있음

2 검토결과

○○부에 이첩

3 이첩사유

피신고자가 간호대학 발전기금에서 일부 금액을 인출하여 사용한 내역에 대해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당초 ‘간호대학 캠퍼스 이전 관련 사후조치 경비’ 항목으로 승인된 금액이 ‘수당’ 명목으로 변경되어 지급된 점 등이 확인되어 피신고자의 임의 소비행위에 대한 조사의 필요성이 있음

4 처리결과

○○부 : 피신고자가 ‘2022년도 발전기금’ 금액 중 일부를 사적으로 사용한 점을 확인하여 중징계 및 회수 처분하고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발

※ 통보일자: 2024. 11. 25.

5 적용법령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정의), 제59조(신고내용의 확인 및 이첩)

중학교 현장체험학습 용역계약 관련 부패행위

관계기관 송부(2023. 11. 1.)



1

부패행위 신고 사례

1 신고내용

피신고자는 ○○중학교 2학년,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현장체험학습 위탁용역 입찰공고를 추진하면서 1회 유찰된 이후, 입찰에 참여하지 않은 업체와의 수의계약을 부당 진행하였고, 이에 대해 문제제기가 있자 수의계약을 중단한 후 형식적인 재입찰 공고절차를 거쳐 종국에는 당초 수의계약업체가 낙찰받게 함으로써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는 등 유착 혐의가 있다.

2 검토결과

○○교육청에 이첩

3 송부이유

계약 관련 규정 등을 위반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의 필요성이 있음

4 처리결과

○○교육청: 현장체험학습 용역 입찰 및 수의계약 과정에서 계약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것을 확인하여 경고 조치 및 기관통보

※ 통보일자: 2024. 1. 15.

5 적용법령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정의), 제59조(신고내용의 확인 및 이첩)

제 2 장

공공재정 지급금 부정수급 신고사건



1. 2024년 공공재정 지급금 부정수급 신고사건
2. 신고사건 처리결과 추록



2024
부패·공익신고 및 보상 사례집

Anti-Corruption & Civil Rights Commission

제2장

공공재정 지급금 부정수급 신고사건

1

2024년 공공재정 지급금 부정수급 신고사건

군납농산물 연중유통체계 구축사업 보조금 부정수급

관계기관 송부(2024. 1. 2.)



1 신고내용

피신고자는 군납농산물을 보관하여 유통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된 저온저장고를 목적과 달리 해당 ○○센터의 물품을 보관하는 용도로만 사용하는 수법으로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혐의가 있음

2 검토결과

○○도에 송부

3 송부사유

피신고자의 보조금 부정수급 혐의에 대한 조사 및 환수와 관련 공무원에 대한 감사 등 행정조치를 위해 송부

4 처리결과

- ○○도: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을 목적 외로 사용한 사실을 적발하여 47,411,650원 환수
 - ○○시가 사후관리기간 내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여 “주의” 처분
- ※ 통보일자: 2024. 5. 22.

5 적용법령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정의), 제59조(신고내용의 확인 및 이첩), 「지방자치단체 보조금법」(이하 “지방보조금법”이라 함) 제13조(지방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 금지), 제34조(지방보조금수령자에 대한 지방보조금의 환수), 제35조(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부과·징수), 제38조(벌칙)

실업급여 부정수급

관계기관 송부(2024. 1. 19.)



1 신고내용

피신고자가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고액의 이자소득이 있음에도 소득을 신고하지 않는 수법으로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혐의가 있음

2 검토결과

○○부 및 경찰청에 송부

3 송부사유

피신고자의 보조금 부정수급 혐의에 대한 수사, 환수 및 행정조치를 위해 각 송부

4 처리결과

- ○○부: 피신고자가 부정수급한 사실을 적발하여 총 28,857,000원 환수
(부정수급액: 14,428,000원, 추가징수액: 14,428,000원)
※ 통보일자: 2024. 6. 4.
- 경찰청: 피신고자가 부정수급한 사실을 확인하여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
※ 통보일자: 2024. 5. 31.

5 적용법령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정의),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이하 “공공재정환수법”이라 함) 제2조(정의), 「고용보험법」 제61조(부정행위에 따른 급여의 지급 제한), 제62조(반환명령 등), 제116조(벌칙), 「형법」 제347조(사기)

03

전기자동차 보조금 부정수급

1분과위원회(2024. 1. 22.) | 심사보호국장



1 신고내용

피신고자가 보조금 수령의 필수조건인 '자부담금 1억 원 이상'을 거래처로부터 받지 않았는데도 받은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여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혐의가 있음

2 검토결과

대검찰청 및 ○○도에 이첩

3 이첩사유

피신고자의 보조금 부정수급 혐의에 대한 수사, 환수 및 행정조치를 위해 이첩

4 처리결과

- **대검찰청:** 기초수사 후 경찰청에 보완 수사 요청, 경찰청은 피신고자가 거래처로부터 자부담금 1억 원 이상을 받지 않았는데도 받은 것처럼 이면계약서 등을 만들어 보조금 신청의 증빙자료로 사용한 사실을 확인하여 검찰 송치

※ 통보일자: 2024. 7. 25.

- ○○도: 조사 중

5 적용법령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정의), 제59조(신고내용의 확인 및 이첩), 「공공재정환수법」 제2조(정의), 제8조(부정이익등의 환수), 제9조(제재부가금의 부과·징수), 「형법」 제37조(사기), 제355조(횡령, 배임)

04

요양급여비용 부정수급

1분과위원회(2024. 1. 22.) | 심사보호국장



1 신고내용

피신고자는 '요양기관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등급을 실제 등급보다 높게 인정받기 위해, ○○병원에서 근무하지 않은 간호사를 마치 근무하는 것처럼 등록하여 요양급여비를 부당하게 수급한 의혹이 있음

2 검토결과

경찰청 및 ○○부에 이첩

3 이첩사유

피신고자의 ○○병원 요양급여비용 부정수급 혐의에 대한 수사, 환수 및 행정조치를 위해 이첩

4 처리결과

- 경찰청: 피신고자가 요양급여비용을 편취한 사실을 확인하고 사기 및 의료법위반 혐의로 검찰 송치
 - ○○병원에 면허 대여한 간호사 박○○ 외 3인을 의료법위반 혐의로 검찰 송치
 - ※ 통보일자: 2024. 8. 28.
- ○○부: 조사 중

5 적용법령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정의), 제59조(신고내용의 확인 및 이첩), 「공공재정환수법」 제2조(정의), 제8조(부당이득등의 환수), 「형법」 제347조(사기),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부당이득의 징수), 제99조(과징금), 제115조(벌칙), 「의료급여법」 제23조(부당이득의 징수), 제29조(과징금 등), 「의료법」 제4조의3(의료인의 면허 대여 금지 등), 제65조(면허 취소와 재교부), 제87조의2(벌칙)

2

공공재정 지급금 부정수급 신고사건

휴업급여 부정수급

관계기관 송부(2024. 2. 2.)



1 신고내용

피신고자는 산업재해 치료를 위한 요양기간 중에도 정상적으로 급여를 받았는데도 꾸민 서류를 제출하는 수법으로 정부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혐의가 있음

2 검토결과

○○부에 송부

3 송부사유

피신고자의 보조금 부정수급 혐의에 대한 감사, 환수 등 행정조치를 위해 송부

4 처리결과

- ○○부: 피신고자가 받은 휴업급여 부당이득 16,078,540원 환수 결정
※ 통보일자: 2024. 3. 8.

5 적용법령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정의), 「공공재정환수법」 제2조(정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7조(벌칙)

브랜드택시 사업 재정지원금 부정수급

관계기관 송부(2024. 2. 2.)



1 신고내용

피신고자는 ○○시가 지원하는 브랜드택시 사업을 수행하면서 조합원들에게 지급하지도 않은 차량 통신료를 마치 지급한 것처럼 보조금 정산서를 작성하여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혐의가 있음

2 검토결과

○○도에 송부

3 송부사유

피신고자의 브랜드택시 사업 지원금 부정수급 혐의에 대한 조사, 환수 및 행정조치를 위해 송부

4 처리결과

- ○○도: 보조금 50,990,100원, 제재부가금 39,441,600원 등 총 90,431,700원 환수

※ 통보일자: 2024. 9. 25.

5 적용법령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정의), 제59조(신고내용의 확인 및 이첩), 「지방보조금법」 제13조(지방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 금지, 제34조(지방보조금수령자에 대한 지방보조금의 환수), 제35조(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부과·징수), 제38조(벌칙)

2

공공재정 지원금 부정수급 신고사건

폐업 소상공인 재취업교육 사업비 편취

1분과위원회(2024. 3. 4.) | 심사보호국장



1 신고내용

피신고자는 교육 업무를 수행한 직원들에게 상담비, 진행자비 등의 명목으로 지급한 후 이 중 일부를 다시 돌려받는 수법으로 보조금을 편취한 혐의가 있음

2 검토결과

경찰청 및 ○○부에 이첩

3 이첩사유

피신고자의 보조금 편취 혐의에 대한 조사·환수, 제재부기금의 부과·징수 및 기타 부패행위 등에 대한 수사를 위해 이첩

4 처리결과

- **경찰청:** 피신고자가 보조금을 부당하게 용도 외로 사용하여 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
※ 통보일자: 2024. 8. 8.
- **○○부:** 조사 중

5 적용법령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정의), 제59조(신고내용의 확인 및 이첩 등), 「공공재정환수법」 제2조(정의), 「형법」 제347조(사기)

지역아동센터 보조금 부정수급

관계기관 송부(2024. 3. 6.)



1 신고내용

피신고자는 2021. 7.부터 센터를 이용하는 아동들에게 지급되는 급식비를 부풀려 청구하는 수법으로 지역아동센터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혐의가 있음

2 검토결과

경찰청 및 ○○시에 송부

3 송부사유

피신고자의 보조금 부정수급 혐의에 대한 수사, 환수 및 행정조치를 위해 송부

4 처리결과

- **경찰청:** 피신고자가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에게 지급되는 급식비 중 43,153,700원을 부정한 방법으로 편취 하여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
※ 통보일자: 2024. 9. 25.
- **○○시:** 조사 중

5 적용법령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정의), 「아동복지법」 제61조(보조금의 반환명령), 「형법」 제347조(사기)

2

공공재정 지급금 부정수급 신고사건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관계기관 송부(2024. 3. 15.)



1 신고내용

피신고자는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로 「○○ 다부처 패키지 혁신기술개발사업」을 수행하면서 개발사업에 참여한 공동연구개발기관인 (주)□□가 수행해야 할 과제를 대신 수행하고, 마치 (주)□□가 과제를 수행한 것처럼 보고서를 작성하여 연구개발비를 부정수급한 혐의 등이 있음

2 검토결과

○○부에 송부

3 송부사유

피신고자의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혐의에 대해 조사, 환수 등 행정조치를 위해 송부

4 처리결과

- ○○부: 연구계획상 (주)□□이 수행해야 할 과제를 이면계약을 통해 (주)○○이 대신 수행하는 등 연구 부정행위를 확인하여 연구비 202,960,350원 환수 및 제재부가금 309,911,631원, 부과 참여제한 2년
 - (주)□□이 수행해야 할 연구과제를 인수한 △△(주)가 연구재료비를 부당집행 한 것을 확인하여 115,994,546원 환수
- ※ 통보일자: 2024. 6. 26.

5 적용법령

「공공재정환수법」 제2조(정의), 제8조(부정이익등의 환수), 제9조(제재부가금의 부과·징수),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1조(연구개발과제 협약 등), 제13조(연구개발비의 지급 및 사용 등), 제31조(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의 금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부정수급

관계기관 송부(2024. 4. 1.)



1 신고내용

피신고자는 근무하지 않은 직원을 등록하는 수법으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부정수급한 의혹이 있음

2 검토결과

○○부 및 경찰청에 송부

3 송부사유

피신고자의 보조금 부정수급 혐의에 대한 환수 및 행정조치를 위해 각 송부

4 처리결과

- ○○부: 피신고자가 부정수급한 사실을 확인하여 36,120,450원 환수 및 참여 제한 (1년)
※ 통보일자: 2024. 5. 24.
- 경찰청: 피신고자가 부정수급한 사실을 확인하여 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
※ 통보일자: 2024. 4. 18.

5 적용법령

「공공재정환수법」 제2조(정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보조금법”이라 함) 제33조 (보조금수령자에 대한 보조금의 환수), 제33조의2(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부과·징수), 제40조 (벌칙), 「형법」 제347조(벌칙)

2

공공재정 지급금 부정수급 신고사건

기초생활보장급여 및 한부모가족 지원금 부정수급

관계기관 송부(2024. 4. 5.)



1 신고내용

피신고자는 양말 포장과 노래방 도우미 일을 하면서 상당한 소득이 있는데도 이를 숨기고 기초생활보장급여와 한부모가족 지원금을 부정수급한 혐의가 있음

2 검토결과

○○시에 송부

3 송부사유

피신고자의 기초생활보장급여 및 한부모가족 지원금 부정수급 혐의에 대한 조사 및 환수 등 행정 조치를 위해 송부

4 처리결과

- ○○시: 피신고자가 부정수급한 혐의를 적발하여 기초생활보장급여 76,208,420원, 한부모가족 지원금 8,070,000원 등 총 84,278,420원 환수 결정
 - 소득인정액 기준 초과로 기초생활보장급여 및 한부모가족 지원금 지급 중지
 - 수사의뢰 결과, ○○경찰서는 피신고자의 일부 혐의에 대하여 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
- ※ 통보일자: 2024. 7. 23.

5 적용법령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정의), 제59조(신고내용의 확인 및 이첩 등),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7조(신고의 의무), 제46조(비용의 징수), 제49조(벌칙), 「한부모가족지원법」 제25조의 2(부정수급자에 대한 비용의 징수), 제29조(벌칙)

장기요양급여비용 부정수급

관계기관 송부(2024. 4. 5.)



1 신고내용

피신고자1, 2는 ○○센터의 종사자가 실제로 근무하지 않거나 근무시간을 준수하지 않았음에도 거짓으로 관련 서류를 작성·제출하는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정수급한 혐의가 있음

2 검토결과

○○공단에 송부

3 송부사유

피신고자1, 2의 장기요양급여비용 부정수급 혐의에 대한 조사 및 환수 등 행정조치를 위해 송부

4 처리결과

- ○○공단: 피신고자들이 ○○센터 종사자인 간호사 최○○의 근무시간을 총 13개월간 허위등록하는 수법으로 부정청구한 사실을 적발하여 총 76,672,830원 환수
※ 통보일자: 2024. 12. 9.

5 적용법령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정의), 제59조(신고내용의 확인 및 이첩 등),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의5(장기요양급여 제공의 제한), 제43조(부당이득의 징수)

13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급

1분과위원회(2024. 4. 8.) | 심사보호국장



1 신고내용

○○어린이집 원장인 피신고자 1이 급식 식자재 납품업체 대표인 피신고자 2와 결탁하여 어린이집 급식비를 부풀려 청구하는 수법으로 보조금을 부당하게 편취한 혐의가 있음

2 검토결과

경찰청 및 ○○도에 이첩

3 이첩사유

피신고자의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급 혐의에 대한 수사와 조사 및 환수처분 등 행정조치를 위해 각 이첩

4 처리결과

- 경찰청: 피신고자 2(식자재 납품업체 대표)가 피신고자 1(어린이집 원장)에게 식자재 대금을 과다 청구하여 받은 후 일부 금액을 피신고자 1에게 되돌려준 사실을 확인하고, 피신고자 1이 어린이집 보조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실을 확인하여 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
※ 통보일자: 2024. 2. 3.
- ○○도: 조사 중

5 적용법령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정의), 제59조(신고내용의 확인 및 이첩 등), 「아동복지법」 제61조(보조금의 반환명령)

14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지원금 부정수급

1분과위원회(2024. 6. 10.) | 심사보호국장



1 신고내용

피신고자들은 서류를 허위로 꾸며 신고자의 고용 기간을 속이는 등의 수법으로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지원금을 부정수급한 혐의가 있음

2 검토결과

○○부에 이첩

3 이첩사유

피신고자들의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지원금 부정수급 혐의에 대한 조사와 환수처분 등 행정조치를 위해 이첩

4 처리결과

- 부: 피신고자1이 부정수급한 사실을 확인하여 총 3,800,000원 환수 및 제재부가금 1,900,000원 부과, 보조금 지급제한 5년 및 형사고발

※ 통보일자: 2024. 11. 20.

5 적용법령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정의), 제59조(신고내용의 확인 및 이첩 등), 「보조금법」 제33조 (보조금수령자에 대한 보조금의 환수), 제33조의2(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부과·징수), 제40조 (벌칙), 제41조(벌칙)

2

공공채정 지원금 부정수급 신고사건

15

청년창업지원금 부정수급

1분과위원회(2024. 6. 10.) | 심사보호국장



1 신고내용

피신고자는 직원 인건비를 부풀려 청구·지급한 후 그 차액을 되돌려 받거나, 실제 수행하지 않은 외주용역을 수행하였다고 보고서를 작성하는 수법으로 ○○부로부터 청년창업지원금을 부정수급한 혐의가 있음

2 검토결과

○○부 및 경찰청에 이첩

3 이첩사유

피신고자의 청년창업지원금 부정수급 혐의에 대한 수사 및 환수처분 등 행정조치를 위해 이첩

4 처리결과

- ○○부: 피신고자가 부정수급을 인정하여 23,403,695원 환수 및 참여제한 3년
※ 통보일자: 2025. 3. 12.
- 경찰청: 피신고자가 부정수급한 사실을 확인하여 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
※ 통보일자: 2024. 11. 22.

5 적용법령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정의), 제59조(신고내용의 확인 및 이첩 등), 「형법」 제347조(사기)

16

AI 살처분 보상금 부정수급

1분과위원회(2024. 6. 10.) | 심사보호국장



1 신고내용

피신고자는 AI 살처분시 축종 및 증빙자료를 허위로 작성하는 방법으로 AI 살처분 보상금을 부정수급한 혐의가 있음

2 검토결과

경찰청 및 ○○도에 이첩

3 이첩사유

피신고자의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혐의에 대한 수사, 감사와 환수 및 행정조치를 위해 각 이첩

4 처리결과

- 경찰청: 피신고자가 부정수급한 혐의를 인정하여 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
※ 통보일자: 2025. 2. 5.
- ○○도: 피신고자가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혐의를 인정하여 527,035,700원 환수
※ 통보일자: 2024. 9. 2.

5 적용법령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정의), 제59조(신고내용의 확인 및 이첩 등), 「공공재정환수법」 제2조(정의), 「형법」 제347조(사기)

2

공공재정 지급금 부정수급 신고사건

환경개선사업 보조금 부정수급

관계기관 송부(2024. 7. 23.)



1 신고내용

피신고자는 「2019년 ○○ 환경개선 사업」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아 보조금으로 설치해야 할 ‘액상공급장치’를 무상 임대로 설치하고, 무상 임대한 업체가 생산하는 액상원료로 대체해 공급받는 수법으로 환경개선보조금을 부정수급한 혐의가 있음

2 검토결과

○○도, ○○청 및 경찰청에 송부

3 송부사유

피신고자의 환경개선보조금 부정수급 혐의에 대한 수사, 환수 및 행정조치를 위해 각 송부

4 처리결과

- ○○도: 피신고자가 부정수급한 사실을 확인하여 140,000,000원 환수
- 제재부가금 부과는 ○○청 부정수급 심의위원회에서 결정 예정
※ 통보일자: 2024. 9. 24.
- ○○청 및 경찰청: 조사 중

5 적용법령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정의), 「보조금법」 제33조(보조금수령자에 대한 보조금의 환수), 제40조(벌칙)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1분과위원회(2024. 9. 9.) | 심사보호국장



1 신고내용

피신고자는 다수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면서 장비를 구입하는 것처럼 속이고 참여연구원을 허위로 등록하여 연구개발비를 편취한 혐의가 있음

2 검토결과

○○부, △△부, □□부 및 대검찰청에 이첩

3 이첩사유

피신고자의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의혹에 대한 감사, 환수, 제재부가금 부과 등 행정조치 및 수사를 위해 각 이첩

4 처리결과

- ○○부: 피신고자가 부정수급한 사실을 확인하여 622,495,029원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 참여제한 2년
※ 통보일자: 2024. 1. 6.
- △△부, □□부 및 대검찰청: 조사 중

5 적용법령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정의), 제59조(신고내용의 확인 및 이첩 등), 「공공재정환수법」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8조(부정이익등의 환수), 제9조(제재부가금의 부과·징수), 「형법」 제347조(사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1조(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의 금지), 제32조(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

일학습병행제 훈련지원금 부정수급

1분과위원회(2024. 9. 30.) | 심사보호국장



1 신고내용

피신고자들은 실제 현장 교육을 하지 않았는데도 서류를 꾸며 제출하는 수법으로 일학습병행제 사업 관련 정부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혐의가 있음

2 검토결과

경찰청 및 ○○부에 이첩

3 이첩사유

피신고자들의 일학습병행제 훈련지원금의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혐의에 대한 환수, 수사 등 행정 조치를 위해 이첩

4 처리결과

- 경찰청: 피신고자들이 국가보조금 626,029,580원을 부정수급한 사실을 확인하여, 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
※ 통보일자: 2025. 3. 13.
- ○○부: 조사 중

5 적용법령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정의), 「보조금법」 제40조(벌칙), 「형법」 제347조(사기) 「공공재정 환수법」 제2조(정의)

제2장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사건

2

신고사건 처리결과 추록

장애인 근로지원인 보조금 부정수급

관계기관 송부(2023. 2. 7.)



1 신고내용

피신고자들은 장애인은 사업장에 출근하지 않고 근로지원인만 출근하여 세탁 관련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제공 시간에 세탁 업무를 수행하였음에도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조작하는 수법으로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한 혐의가 있음

2 검토결과

○○도, ○○공단 및 경찰청에 송부

3 송부사유

피신고자들의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혐의에 대한 수사, 감사와 환수 및 행정조치를 위해 각 송부

4 처리결과

- ○○도 ○○시: 피신고자들이 부정수급한 사실을 확인하여 252,570,999원 환수 및 활동지원사 4명 자격정지 (8개월~1년), 이용자 3명 이용정지(1년), 활동지원기관 운영정지 (30일)
※ 통보일자: 2023. 3. 28.
- ○○공단: 피신고자들이 부정수급 한 사실을 확인하여 근로지원인 7명 서비스 신청 및 제공 중단 (1년)하고, 91,942,164원 환수
※ 통보일자: 2024. 5. 9.
- 경찰청 : 피신고자들이 부정수급한 사실을 확인하여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
※ 통보일자: 2024. 3. 12.

5 적용법령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정의), 「공공재정환수법」 제6조(부정청구등 금지), 제7조(공공재정지급금의 지급 중단), 제8조(부정이익등의 환수), 「형법」 제347조(사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장애인고용법”이라 함) 제19조의2(근로지원인 서비스의 제공),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2(수급자 등의 준수사항), 제19조(활동지원급여의 중단 또는 제한), 제27조(활동지원사), 제47조(벌칙)

청소년쉼터 보조금 부정수급

관계기관 송부(2023. 6. 30.)



1 신고내용

피신고자 1이 쉼터 직원을 허위 등록하여 인건비를 부정수급하고 보조금을 사적 용도로 사용하였으며, 특별교육 강사료를 허위 청구하여 편취한 혐의가 있음

2 검토결과

○○도 및 ○○교육청에 송부

3 송부사유

피신고자들의 보조금 편취 혐의에 대한 수사, 환수 등 행정조치를 위해 각 송부

4 처리결과

- ○○도: 피신고자가 보조금을 편취한 사실을 확인하여 472,015,220원 환수
 - 피신고자1: ○○지방검찰청 구속 송치, 법원 판결 후 제재부가금 부과 예정
 - ※ 통보일자: 2024. 3. 6.
- ○○교육청: 조사 중

5 적용법령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정의), 「공공재정환수법」 제8조(부정이익등의 환수), 제9조(제재부가금의 부과·징수), 「보조금법」 제33조(보조금수령자에 대한 보조금의 환수), 제40조(벌칙)

2

공공재정 지출금 부정수급 신고사건

장애인고용장려금 부정수급

관계기관 송부(2023. 7. 5.)



1 신고내용

피신고자는 (주)○○에서 일할 장애인근로자를 채용하고 실제 (주)○○에서 근로시키면서 △△ 직원인 것처럼 관련서류를 허위 작성·제출하는 방법으로 장애인고용장려금을 부정수급한 혐의가 있음

2 검토결과

○○부에 송부

3 송부사유

피신고자의 장애인고용장려금 부정수급 혐의에 대한 감사, 환수 및 행정조치를 위해 송부

4 처리결과

- ○○부: 피신고자가 장애인고용장려금을 부정수급한 사실을 확인하여 83,530,000원 환수 및 제재부가금 417,650,000원 부과
- '23. 10. 23. 형사고발 및 '24. 5. 1. 사회적기업 인증 취소 처분
※ 통보일자: 2024. 5. 7.

5 적용법령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정의), 제59조(신고내용의 확인 및 이첩 등), 「장애인고용법」 제31조(부당이득금의 징수 및 지급 제한), 제84조(벌칙),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8조(인증의 취소)

농업보조금 부정수급

관계기관 송부(2023. 8. 9.)



1 신고내용

피신고자는 원예브랜드사업의 사후관리 기간 중에 시설 중 일부를 승인 없이 불법으로 임대하는 등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혐의가 있음

2 검토결과

○○부에 송부

3 송부사유

피신고자의 농업보조금 부정수급 혐의에 대한 조사를 위해 송부

4 처리결과

- ○○부: 피신고자가 사후관리 기간 중 ○○부 장관 또는 도지사의 승인 없이 시설 일부를 임대하여 발생한 부당이익 71,000,000원 환수 조치
※ 통보일자: 2024. 3. 28.

5 적용법령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정의), 「공공재정환수법」 제2조(정의), 제8조(부정이익등의 환수), 제9조(제재부가금의 부과·징수)

스마트공장구축사업 지원금 부정수급

관계기관 송부(2023. 8. 30.)

**1 신고내용**

피신고자들은 스마트공장구축사업의 '도입기업'과 '공급기업'으로 사업에 참여하여 정부지원금을 채무변제 등 사업과 무관한 곳에 사용한 혐의가 있음

2 검토결과

○○부에 송부

3 송부사유

피신고자들의 채무변제나 공장유지보수비로 사업비를 부당하게 사용하기로 공모한 정황을 확인함에 따라 이에 대한 조사, 환수 및 행정조치를 위해 송부

4 처결결과

- ○○부: 피신고자들이 부정수급한 사실을 확인하여 총 160,350,000원 환수, 참여제한 3년 부여
※ 통보일자: 2024. 9. 4.

5 적용법령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정의), 제59조(신고내용의 확인 및 이첩 등), 「공공재정환수법」 제5조(다른법률과의 관계), 제8조(부정이익등의 환수), 제9조(제재부가금의 부과·징수),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1조(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의 금지), 제32조(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 처분)

25

택시회사 불법 운영 및 택시 감차보상 지원금 등 부정수급

1분과위원회(2023. 9. 18.) | 심사보호국장



1 신고내용

피신고자는 이중장부 및 허위 문서를 작성하는 수법으로 수년간 정부로부터 택시 감차보상 지원금, 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 일자리안정자금, 코로나 지원금, 유가보조금 등을 부정수급한 혐의가 있음

2 검토결과

경찰청, ○○부, △△부 및 ○○도에 이첩

3 이첩사유

피신고자의 택시회사 불법 운영 및 감차보상 지원금 등 총 12가지 지원금에 대한 부정수급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각 이첩

4 처리결과

- **경찰청**: 피신고자가 법인 택시회사를 지입 방식으로 불법 운영한 점과 택시 감차보상 지원금 등 12가지 지원금 약 7억 원 상당을 편취 한 점을 적발하여 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
- 피신고자 및 함께 공모한 택시기사 등 총 41명 송치
※ 통보일자: 2024. 2. 6.
- **○○부 ○○청**: 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을 부정수급한 사실을 확인하여 보조금 및 제재부가금 19,598,430원 환수하고, 9개월 지급제한 처분
- **○○부 ○○공단**: 일자리안정자금 부정수급을 확인하여 48,426,070원 환수
※ 통보일자: 2024. 2. 6.
- **△△부 및 ○○도**: 조사 중

5 적용법령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정의), 제59조(신고내용의 확인 및 이첩 등), 「보조금법」 제33조(보조금 수령자에 대한 보조금의 환수), 제33조의2(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부과·징수), 제41조(벌칙),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8조(보조금의 사용 등), 제12조(운송비용 전가 금지 등), 제18조(택시운송사업면허의 취소) 제23조(과태료)

2

공공채정 지원금 부정수급 신고서건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관계기관 송부(2023. 10. 24.)



1 신고내용

피신고자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유급휴직을 실시하고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받던 중 지원금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신규 직원을 채용했는데도 이를 신고하지 않는 수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수급한 혐의가 있음

2 검토결과

○○부에 송부

3 송부사유

피신고자의 보조금 부정수급 혐의에 대한 환수 및 행정조치를 위해 송부

4 처결결과

- 부: 피신고자가 부정수급한 사실을 확인하여 64,175,540원 환수 및 지급 제한(12개월)
※ 통보일자: 2024. 4. 15.

5 적용법령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정의), 「고용보험법」 제21조(고용조정 지원), 제35조(부정행위에 따른 지원의 제한 등), 제116조(벌칙), 제117조(양벌규정)

창업지원금 부정수급

1분과위원회(2023. 12. 18.) | 심사보호국장



1 신고내용

피신고자는 허위 견적서 및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제작비를 부풀리는 수법 등으로 지원금을 부당하게 편취한 혐의가 있음

2 검토결과

○○부 및 ○○시에 이첩

3 이첩사유

피신고자의 보조금 부정수급 혐의에 대한 조사,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 등 행정조치를 위해 각 이첩

4 처리결과

- ○○부: 피신고자가 부정수급한 사실을 확인하여 30,004,572원 환수
※ 통보일자: 2025. 1. 2.
- ○○시: 피신고자가 부정수급한 사실을 확인하여 12,000,000원 환수
※ 통보일자: 2024. 9. 3.

5 적용법령

「부패방지권익위법」 제59조(신고내용의 확인 및 이첩 등), 「공공재정환수법」 제2조(정의), 제8조(부정이익등의 환수), 제9조(제재부가금의 부과·징수)

제 3 장

공익침해 행위 신고사건



1. 2024년 공익침해 행위 신고 사건
2. 신고사건 처리결과 추록



2024
부패·공익신고 및 보상 사례집

Anti-Corruption & Civil Rights Commission

제3장
공익침해 행위 신고 사건

1

2024년 공익침해 행위 신고 사건

개발제한구역 무단 용도변경

관계기관 송부(2024. 3. 20.)



1 신고내용

피신고자는 ○○시 ○○동 ○○번지의 지목 잡종지를 동식물 관련 시설로 건축허가(신고) 하였으나 건축물의 사용 승인 또는 개발행위 허가없이 무단으로 형질을 변경하여 영업장으로 이용하는 등 공익침해행위를 한 혐의가 있음

2 검토결과

○○도 ○○시 송부

3 송부사유

신고내용만으로는 피신고자의 법 위반 혐의를 단정하기 어렵지만, 제출한 토지대장 기재사항에 해당 토지의 지목이 잡종지로 확인되는 점, 영업장으로 이용되는 현장사진과 달리 공익신고 대상 필지에 대한 일반민원 신청 답변자료에 동식물 관련 시설로 건축허가(신고) 내역은 존재하나 개발행위 허가 내역은 존재하지 않는 점 등으로 미루어 피신고자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에 따라 관할 지자체에 송부하기로 함

4 처리결과

- ○○도 ○○시: 공익신고 필지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내 무단 용도변경 위법행위가 확인됨에 따라 행정절차에 따라 이행강제금 1억 7,100여만 원 부과
-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기관의 조사결과를 수용하여 종결처리

5 적용법령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제30조, 제30조의2

사업장의 4대 보험 신고의무 위반

관계기관 송부(2024. 6. 11.)



1 신고내용

피신고자는 종합건설사인 ○○건설이 ○○시 ○○구 ○○동 ○○번지에 시공한 '○○ 오피스텔' 신축공사를 하도급받아 전기공사를 하면서, 피신고업체에 소속되어 해당 공사현장에서 1개월 이상 근로한 근로자들에 대한 4대 보험 신고의무를 위반한 혐의가 있음

2 검토결과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송부

3 송부사유

신고자가 의혹사항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화면' 등 관련 정황증거를 제출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신고자의 혐의를 배제하기도 어려우므로 피신고업체의 근로자들에 대한 4대 보험 가입 여부에 대하여 조사·확인한 후 그 조사 결과에 따라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에 따라 해당 업무 지도·감독기관에 송부하기로 함

4 처리결과

-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자 6명 등에 대한 사업장 가입자 자격 취득 처리 및 보험료 705여만 원 부과
-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자 6명에 대해 직장 가입자 자격 취득처리 및 보험료 478여만 원 부과
- 근로복지공단: 일용근로자 근로내용 확인 및 정정 신고, 고의·과실 여부 등 확인하여 과태료 부과 검토
-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기관의 조사결과를 수용하여 종결처리

5 적용법령

「국민연금법」 제21조, 「국민건강보험법」 제7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에 관한 법률」 제5조

국가 기술 자격증 무단대여 등

관계기관 송부(2024. 5. 7.)



1 신고내용

피신고자는 정상적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없는 페이퍼컴퍼니임에도 불구하고 관급공사 도급 및 재하도급을 하였고, 기술자를 고용하지 않고 자격증만 빌려 회사를 운영 중으로 「전기공사업법」 등을 위반한 혐의가 있음

2 검토결과

○○도 송부

3 송부이유

신고자가 제출한 피신고업체의 사업자등록증 사업장 소재지와 실제 사업장으로 사용하는 부동산 계약서가 다르게 표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 ○○시에서 이메일로 '○○개선사업'에 착공계를 제출하라는 공사도급 내용이 확인되고, 자격증 대여 의혹이 있는 전기공사업 등록 기술자들의 피신고업체 출입자 명부 기록이 없는 점 등으로 미루어 피신고자의 「전기공사업법」 등 혐의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에 따라 관할 지자체에 송부하기로 함

4 처리결과

- ○○도: 피신고자가 전기기술자의 국가기술자 자격증을 대여하여 전기공사업 영위를 위한 등록기준을 충족해온 것으로 의심되어 전기공사업 등록사항 변경(사무실) 거짓 신고에 대해 과태료 100만 원 부과, 전기공사업 등록기준 미달(사무실)에 대해 과징금 200만 원 부과, 「국가기술자격법」 위반 혐의로 고발
-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기관의 조사결과를 수용하여 종결처리

5 적용법령

「전기공사업법」 제4조, 제9조, 제28조, 제46조, 「국가기술자격법」 제15조, 제16조, 제26조, 제27조 등

광고용 전화번호 미등록 대부중개업자 광고

관계기관 송부(2024. 10. 31.)



1 신고내용

피신고자는 (주)○○대부중개 대표로 광고용 전화번호를 게시하지 않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외국인 대상으로 대부중개 광고를 하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가 있음

2 검토결과

○○시 송부

3 송부이유

피신고자가 홈페이지를 통해 실제로 대부조건 등에 관하여 광고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으로 미루어 피신고자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므로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에 따라 관할 지자체에 송부하기로 함

4 처리결과

- ○○시 ○○구: 피신고자에게 과태료 1,600여만 원 부과 및 영업 일부정지(3개월, 광고금지) 처분
-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기관의 조사결과를 수용하여 종결처리

5 적용법령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 제9조

3

공익침해 행위 신고 사례

다중이용시설 안전시설기준 위반

관계기관 송부(2024. 2. 27.)



1 신고내용

피신고자는 상가 건물 지하 1층에서 콜라텍과 호프집을 함께 운영하면서 영업의 특성상 불특정 다수인이 출입하는 시설이고,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생명·재산 피해 우려가 높은 시설임에도 화재 발생에 대비한 소화기구가 제대로 비치되지 않고, 업소 주 출구 이외에는 지상으로 통하는 비상 출구를 설치하지 않거나 폐쇄한 흔적이 있는 등 관련법 위반 혐의가 있음

2 검토결과

○○도 ○○소방서 송부

3 송부이유

신고자가 제출한 USB 영상자료에 의하면 콜라텍 계단 입구에 비치된 1개의 소화기를 제외하고는 콜라텍 내부에는 비치된 소화기와 비상구가 보이지 않으며, 호프집 내부에도 소화기가 비치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는 등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가능성이 있으므로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에 따라 해당 업무 지도·감독기관에 송부하기로 함

4 처리결과

- ○○○도 ○○○소방서: 피신고자의 업소 복도에 물건 적치 행위가 확인되고 방염 대상물품 미사용, 영업장 내부 구조 불법 변경, 영업주의 소방안전교육 미이수가 확인되어 과태료 600만 원 처분
-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기관의 조사결과 수용

5 적용법령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 제25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6조, 제61조

국유재산 무단 사용

관계기관 송부(2024. 9. 12.)



1 신고내용

피신고자는 ○○도 ○○군 ○○면 ○○리 ○○번지 등 13필지 내의 국가 소유 주택 및 토지 등 국유재산을 법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이용하여 영업을 한 혐의가 있음

2 검토결과

○○도 ○○군, ○○도 경찰청 송부

3 송부이유

신고자가 증거자료로 제출한 해당 토지의 등기증명서 및 사진자료 상 해당 토지가 국토교통부 소유로 확인되는 점, 해당 토지에 주택과 정원이 확인되는 점 등으로 미루어 피신고자의 「국유재산법」 위반 혐의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에 따라 관할 지자체에 송부하기로 함

4 처리결과

- ○○도 ○○군: 해당 토지에 무단 설치한 시설에 대한 원상복구 명령 및 변상금 7,450여만 원 부과
-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기관의 조사결과를 수용하여 종결처리

5 적용법령

「국유재산법」 제7조, 제27조, 제74조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한 취득세 증가분 탈루 등

관계기관 송부(2024. 3. 6.)



1 신고내용

피신고자는 형식상 대도시 외 소재 법인(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대도시 내에 있는 ○○시 ○○구 소재 토지를 매입함에 따라 취득세 증가분 약 110억 원을 탈루한 혐의가 있음

2 검토결과

○○시 송부

3 송부이유

이 사건 법인의 공부상 본점 주소지는 개인 소유의 주거용 건축물인 점, 해당 내부공간을 건축물 소유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신고자의 「국유재산법」 위반 혐의가 드러날 가능성이 있으므로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에 따라 관할 지자체에 송부하기로 함

4 처리결과

- ○○시 ○○구: 대도시 내의 법인인 (주)○○에서 이 사건 법인의 중추적인 본점의 기능을 모두 수행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실질적으로 대도시 외에서 대도시 내로 본점을 전입한 것으로 보아 대도시 전입 이후 5년 이내 법인의 과밀억제권역 안 토지의 취득 증가세율이 적용됨이 타당하여, 일반세율을 적용한 기납부세액을 공제한 차액분 및 가산세 과세예고

※ 취득세 총 76억 6,200여만 원

-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기관의 조사결과를 수용하여 종결처리

5 적용법령

「지방세법」 제13조

지방하천 가설교량 무단 설치

관계기관 송부(2024. 11. 4.)



1 신고내용

피신고자들은 ○○도 ○○군 ○○면 ○○리 일원의 ○○천 인근에서 각각 햄버거, 펜션 및 편의점, 번영회, 커피숍, 빵집 등 상점을 운영하는 자들로 하천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천에 무단으로 다리를 설치하여 「하천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음

2 검토결과

○○도 ○○군 송부

3 송부이유

신고자가 제출한 증거자료에서 피신고자의 위반사실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피신고자들의 「하천법」 위반 혐의에 대한 사실관계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에 따라 관할 지자체에 송부하기로 함

4 처리결과

- ○○도 ○○군: 5개 교량 중 1개 교량은 이미 허가사항이 있어 변상금 2만여 원을 부과하고 허가기간 연장 처리를 하였으며, 나머지 4개 교량에 대해서는 원상회복 명령
-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기관의 조사결과를 수용하여 종결처리

5 적용법령

「하천법」 제33조, 제37조, 제69조, 제95조

3

공익침해 행위 신고 시군

학원 교습비 허위 게시

관계기관 송부(2024. 11. 26.)



1 신고내용

피신고자는 ○○도○○교육지원청에서 고시한 '학원(독서실) 교습비 조정기준 설정액'에 의한 교습비 조정기준의 분당 단가 기준을 초과하여 학원 교습비를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가 있음

2 검토결과

○○교육청 송부

3 송부이유

피신고자인 학원 운영자가 관할 교육청에 게시한 교습과정별 분당 단가가 해당 교육지원청에서 고시한 교습비 조정기준 설정액의 기준 단가를 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미루어 관할 감독기관에서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에 따라 송부하기로 함

4 처리결과

- ○○교육지원청: 해당 교습소를 점검한 결과, 등록된 교습비가 아닌 금액을 교습소 외부에 거짓으로 게시한 것이 확인됨에 따라 영업정지 7일 및 과태료 100만 원 부과
-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기관의 조사결과를 수용하여 종결처리

5 적용법령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7조

식품접객업자 준수사항 위반

관계기관 송부(2024. 6. 20.)



1 신고내용

피신고자는 일반음식점 영업자로 식재료를 실온에 그대로 두는가 하면 조리장에 가득한 날벌레 등을 그냥 방치하는 등 식품조리장을 비위생적으로 관리하였고, 일반음식점으로 영업신고 하고도 다류 등을 주로 판매하여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음

2 검토결과

○○도 ○○군 송부

3 송부이유

신고자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피신고자의 음식점에서 제빵을 위한 밀가루 반죽의 뚜껑을 덮지 않고 그대로 트레이에 보관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 점, 조리장이 창틀 주변으로 날파리들이 떨어져 방치된 모습이 보이는 점, 피신고자가 일반음식점으로 영업신고를 하고도 주로 다류를 판매하고 있다는 구체적인 진술이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피신고자에게 제기된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에 따라 관할 지자체에 송부하기로 함

4 처리결과

- ○○도 ○○군: 피신고자의 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어 영업정지 15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1,170여만 원 처분
-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기관의 조사결과를 수용하여 종결처리

5 적용법령

「식품위생법」 제44조

11

노래방업자의 주류 판매 및 접객행위 알선

2분과위원회(2024. 5. 23.) | 심사보호국장



1 신고내용

피신고자는 2024년 ○월 ○일 ○○도 ○○시 ○○로에 위치한 ○○노래연습장에 내방한 손님에게 주류비, 접대비 등 총 10만 원을 받은 후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는 등 접객행위를 하여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가 있음

2 검토결과

○○도경찰청, ○○도 ○○시 이첩

3 이첩사유

신고자가 제출한 동영상 CD에서 피신고자가 손님에게 주류 제공 및 접객행위를 하는 장면이 확인되는 점 등으로 미루어 피신고자가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을 가능성이 상당하므로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9조제3항에 따라 관할 지자체 및 수사기관에 이첩하기로 함

4 처결결과

- ○○경찰서: ○○노래연습장 종업원의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확인되어 검찰 송치
- ○○도 ○○시: ○○노래연습장 업주 김○○에 대하여 대하여 영업정지 120일 처분
-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기관의 조사결과를 수용하여 종결처리

5 적용법령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7조, 제34조

간호조무사의 의료행위 및 대리수술

관계기관 송부(2024. 2. 13.)



1 신고내용

피신고자는 환자의 수술부위를 봉합하는 과정에서 의사인 본인이 직접 하지 않고 간호조무사에게 환자의 수술 부위를 봉합하도록 수시로 지시하였으며, 본인이 수술하여야 하는 환자에 대하여 다른 집도의를 시켜 수술하게 하는 등 「의료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음

2 검토결과

○○시경찰청

3 송부이유

신고자가 피신고자 병원의 수술 관련 동영상 증거자료 등을 통해 위법 혐의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실제 비의료인인 간호조무사가 의료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였는지 여부, 환자 수술시 집도의를 바꾸어 대리수술을 시행하였는지 여부 등 「의료법」 위반 혐의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에 따라 수사기관에 송부하기로 함

4 처리결과

- ○○시경찰청: 「의료법」 위반 피의사실 인지되어 검찰 송치
-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기관의 조사결과를 수용하여 종결처리

5 적용법령

「의료법」 제4조의3, 제27조, 제64조, 제66조, 제80조의2, 제87조의2

약사면허대여등

관계기관 송부(2024. 3. 25.)



1 신고내용

피신고자(약국장)는 수년간 ○○약국에서 약사 면허를 대여받아 부정한 방법으로 약사를 추가 등록하여 「약사법」을 위반하였고, 이와 같은 행위를 통해 약사의 차등수가 적용기준(조제기준)을 위반하여 요양급여비용을 부당청구하는 등 「국민건강보험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음

2 검토결과

○○경찰서, ○○도 ○○시, 국민건강보험공단 송부

3 송부이유

신고자가 제출한 자료 및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신고자의 위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바, 약사 면허를 대여받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근무 약사를 추가로 등록하는 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약제비를 거짓으로 청구하였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의료법」,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혐의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에 따라 관할 지자체 및 수사기관, 해당 업무 지도·감독기관에 송부하기로 함

4 처리결과

- ○○경찰서: 피신고자가 운영하는 약국에서 약사 면허 없는 종업원들이 의약품을 조제하여 「약사법」을 위반하고, 피신고자가 약사 면허를 대여받은 혐의 인정되어 검찰 송치
- ○○도 ○○시: 현장에서 약사면허 대여 위반 여부 확인이 불가하여 ○○경찰서에 수사의뢰
- 국민건강보험공단: 면허 대여 사실관계에 대한 형사처분 확인시, 요양급여 비용 추가 환수 등 관련 조치 실시
-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기관의 조사결과를 수용하여 종결처리

5 적용법령

「약사법」 제6조, 제76조, 제79조, 제93조,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제43조, 제57조, 제98조, 제99조, 제115조

당직 의사 없는 입원실 운영 등

관계기관 송부(2024. 6. 5.)



1 신고내용

피신고자는 42개의 병상을 갖춘 병원급 의료기관인 ○○병원의 원장으로, 병원급 의료기관은 응급환자나 입원환자의 진료 등에 필요한 당직 의료인을 두어야 함에도 간호사나 간호조무사가 야간에 환자를 관리하고 있고, 병원 내에 서울대 출신 의료진이 없음에도 현수막에 서울대 출신 의료진이라고 표기하여 허위·과장 의료광고를 하는 등 「의료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음

2 검토결과

○○시 ○○군 송부

3 송부이유

신고내용만으로 피신고자의 법 위반 혐의를 단정하기 어렵지만, 2명의 의사만으로 야간 당직과 평일 시간대 내과를 비롯한 성형외과, 피부과 등 8개 진료과목을 운영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점 등으로 미루어 피신고자의 「의료법」 위반 혐의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에 따라 관할 지자체에 송부하기로 함

4 처리결과

- ○○도 ○○군: 피신고자의 당직의료인 미배치 사실이 확인되어 시정명령 후 피신고자가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아 업무정지 15일 처분
-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기관의 조사결과를 수용하여 종결처리

5 적용법령

「의료법」 제36조, 제41조, 제63조

3

공익침해 행위 신고 사건

장애인 정서적 학대 및 사회복지사업 보조금 부정수급

관계기관 송부(2024. 5. 31.)



1 신고내용

피신고자는 2022년경 대리시험을 통해 사회복지사 2급 자격을 부정하게 취득하였고, ○○○사회복지종합센터에서 장애인활동지원사로 근무하면서 시각장애인인 김○○에게 정서적 학대를 가하였으며, 장애인활동지원급여를 허위로 청구하여 부당하게 수령하여 「장애인복지법」 등을 위반한 혐의가 있음

2 검토결과

○○도경찰청, ○○○도 ○○시, 국민건강보험공단 송부

3 송부이유

신고내용만으로 피신고자의 법 위반 혐의를 단정하기 어려우나, 제출된 사진자료상 피신고자가 시각장애인 김○○에게 폭언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으로 미루어 피신고자의 「장애인복지법」 등 위반 혐의를 배제하기도 어렵다고 판단되어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에 따라 관할 지자체 및 수사기관, 해당 업무 지도·감독기관에 송부하기로 함

4 처리결과

- ○○○경찰서: 피신고자가 3개월 동안 활동지원 이용자에게 제공한 서비스를 거짓 또는 과장하여 360여만 원을 부당하게 청구 및 수령하여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한 혐의 인정되어 검찰 송치
- 국민건강보험공단: 방문요양 사회복지사 등 배치기준 위반에 따른 부당이득금 490여만 원 확인되어 행정절차 진행 중
- ○○○도 ○○시: 국민건강보험공단 조치결과에 따라 처분 예정
-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기관의 조사결과를 수용하여 종결처리

5 적용법령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9,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 제37조

사업장 폐기물 무단 매립

관계기관 송부(2024. 8. 23.)



1 신고내용

피신고자는 ○○농원의 대표로서 농원 인근의 야산에 산업폐기물을 매립하여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음

2 검토결과

○○도경찰청, ○○도 ○○시 송부

3 송부이유

신고내용만으로 피신고자의 법 위반 혐의를 단정하기 어려우나, 신고자가 피신고자의 폐기물 매립 장소와 매립방법 등을 자세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점, 해당 토지 위에 검은색 흙더미가 쌓여있는 모습이 확인되는 점 등으로 미루어 피신고자의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를 배제하기도 어렵다고 판단되어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에 따라 관할 지자체 및 수사기관에 송부하기로 함

4 처리결과

- ○○도 ○○시: 피신고자가 매립한 것은 폐기물이 아닌 퇴비로 확인되었으나, 피신고자가 보관 중인 퇴비에 대하여 보관기준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과정에서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을 부실하게 입력한 사실이 확인되어 과태료 200만 원 부과
- ○○경찰서: 피신고자가 매립한 것이 폐기물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어 내사종결
-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기관의 조사결과를 수용하여 종결처리

5 적용법령

「폐기물관리법」 제17조, 제48조, 제68조

의료기관에 대한 부당한 경제적 이익 중개 등

관계기관 송부(2024. 6. 10.)



1 신고내용

부동산중개업자인 피신고자는 2024년경 ○○시 ○○구에 위치한 약국의 매매를 중개하는 과정에서 블로그 게시글에 해당 약국과 같은 건물에 위치한 병원에 대한 지원금으로 1억 원을 제공하는 광고를 하여 「약사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음

2 검토결과

○○도, 경찰청 송부

3 송부이유

피신고자가 ○○시 ○○구 소재 약국을 블로그를 통해 소개하면서 해당 약국이 위치한 건물에 위치한 ○○○○○의학과에 대한 지원금으로 1억 원을 제공하는 광고를 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으로 미루어 피신고자의 「약사법」 위반 혐의를 배제하기도 어렵다고 판단되어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에 따라 수사기관에 송부하기로 함

4 처리결과

- ○○경찰서: 피신고자가 ○○○○○의학과에 대한 지원금을 제공하는 광고를 한 「약사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 송치
-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기관의 조사결과를 수용하여 종결처리

5 적용법령

「약사법」 제24조의2, 제94조

식품제조 가공 시 배합비율 위반

관계기관 송부(2024. 2. 2.)



1 신고내용

피신고자는 (주)○○수산이라는 업체를 운영하면서 혼합 날치알 제조 가공 시 표기 배합과 달리 주원료인 날치알보다 저렴한 타 원료를 내용물에 투입하고, 제품 비닐봉투에 조미액의 실제 배합 비율(13%)보다 낮게 허가된 배합(5%)대로 표기하는 등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 혐의가 있음

2 검토결과

○○시 송부

3 송부이유

혼합의 원료 투입 시 물에 부푸는 복원중량 비율(열빙어알 1.45배)을 감안하여 원료를 투입해야 하나 1:1비율을 적용하여 값이 비싼 날치알보다 비교적 값이 저렴한 열빙어알이 많이 투입된 사실과 조미액의 실제 배합 비율은 13%이나 제품 비닐 봉투에 허가된 조미액 배합 비율대로 5%로 속여 표기한 내용이 확인됨에 따라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에 따라 수사기관에 송부하기로 함

4 처리결과

- ○○시: 피신고업체의 생산일지에서 원료의 투입량 대비 생산량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부분을 발견하였고, 빙어알이 약 36시간 이상 물에 잠겨 증량되고 있음을 확인함에 따라 이는 품목제조보고를 허위로 한 것으로 판단하여 과태료 2,400만 원 부과 처분
-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기관의 조사결과를 수용하여 종결처리

5 적용법령

「식품위생법」 제37조, 제101조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관계기관 송부(2024. 6. 24.)



1 신고내용

피신고자들은 2018년 5월부터 2024년 5월까지 ○○시 ○○구 일원에서 수입 농산물을 가공하여 국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혐의가 있음

2 검토결과

농림축산식품부 송부

3 송부이유

제출된 영수증 자료를 보면 베트남 품목명과 중국(中) 품목명이 명시된 매입 영수증이 첨부되어 있기는 하나, 수입산 농산물을 가공하여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에 따라 해당 업무 지도·감독기관에 송부하기로 함

4 처리결과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 ○○사무소: 피신고자의 원산지 허위 표시 사실 확인되어 시정명령, 교육이수명령, 위반사실 공표 및 검찰 송치
-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기관의 조사결과를 수용하여 종결처리

5 적용법령

「원산지표시법」 제5조, 제6조, 제9조

무허가 컨테이너 적치 등 건축법 위반

관계기관 송부(2024. 4. 30.)



1 신고내용

피신고자는 ○○도 ○○시 소재 2개 필지에 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고 불법으로 컨테이너 및 물건을 적치한 혐의가 있음

2 검토결과

○○도 ○○시 송부

3 송부이유

제출된 토지대장에 의하면 해당 토지의 지목은 '전'과 '대'로 확인되고 ○○시의 정보공개서에 의하면 농지로 등록된 해당 토지의 경우 개발행위허가 및 건축신고(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신고내용에 적시된 피신고자의 「건축법」 위반 혐의를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에 따라 관할 지자체에 송부하기로 함

4 처리결과

- ○○도 ○○시: 신고대상 건축물이 위반건축물로 확인되어 이행강제금 1,460여만 원 부과
-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기관의 조사결과를 수용하여 종결처리

5 적용법령

「건축법」 제11조, 제20조

3

공익침해 행위 신고 사건



2024
부패·공익신고 및 보상 사례집

Anti-Corruption & Civil Rights Commission

제3장
공익침해 행위 신고 사건

2

신고사건 처리결과 추록

사용자의 직장내 괴롭힘

관계기관 송부(2023. 11. 22.)



1 신고내용

피신고자는 농업회사법인 ○○마루의 실질적인 사용자로, 해당 업체를 경영하면서도 거래처의 남자 대표에게 신고자(여) 본인을 성희롱하는 발언을 하고, 신고자 본인에게 카카오톡이나 직장에서 모욕적인 발언을 하였으며, 가위나 칼을 던지는 등 신체적인 위협을 하며 권고사직을 강요하였음

2 검토결과

고용노동부 송부

3 송부이유

제출된 카카오톡 대화내용에 의하면 피신고자가 거래처 업체 남자 대표이사에게 신고자를 성희롱하는 발언을 하고 부당하게 업무지시를 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구체적인 조사를 위하여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에 따라 해당 업무 지도·감독기관에 송부하기로 함

4 처리결과

- ○○지방고용노동청 ○○지청: 피신고자의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욕설·폭언 및 위협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판단되어 과태료 500만 원 부과
-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기관의 조사결과를 수용하여 종결처리

5 적용법령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제76조의3, 제116조

「산업안전보건법」 등 위반

관계기관 송부(2023. 8. 10.)



1 신고내용

피신고자들은 2022년 8월부터 공사금액 1억 원 이상 공사에 대해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을 해당 건설공사 착공일의 전날까지 체결하도록 의무화되었음에도, 2023. 1월부터 4월까지 17개 광역자치단체 및 225개 기초자치단체에서 발주한 건설공사 6,900여 건 중 약 5,700여 개 건설공사의 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을 체결하지 않고 건설공사를 시행한 혐의가 있음

2 검토결과

고용노동부 송부

3 송부이유

신고내용만으로 피신고자들의 법 위반 혐의를 단정할 수는 없지만, 제출된 자료들을 검토한바 이에 따르면 피신고자들이 건설공사 계약 및 착수 전에 건설공사의 산업재해 예방지도 관련 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 해당 공사가 기술지도계약 체결 대상 건설공사인지 여부 등에 관한 추가적인 확인 및 그에 따른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에 따라 해당 업무 지도·감독기관에 송부하기로 함

4 처리결과

- **고용노동부:** 신고된 재해예방 기술지도 미체결 의심 건설공사 중 414건에서 이를 체결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어 피신고자들에 대해 과태료 총 3억 4,500여만 원 부과
-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기관의 조사결과를 수용하여 종결처리

5 적용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 제175조

간호사 불법 의료행위 등

2분과위원회(2024. 1. 11.) | 심사보호국장



1 신고내용

피신고자는 숙박업소에서 의사의 적법한 지시 없이 상세불명의 수액을 신고자 본인에게 투여하였고, 피신고자가 재직 중인 ○○대학교병원 내 의료물품을 별도의 처방 및 구매 절차 없이 무단으로 반출한 혐의가 있음

2 검토결과

○○시경찰청, ○○시 ○○구 이첩

3 이첩사유

제출된 메시지 대화 캡처내용 및 각 사진자료 등 증거자료에 의하면, 피신고자가 의사의 처방 없이 구입할 수 없는 전문의약품을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의사의 지시나 처방 없이 신고자에게 임의로 투여하는 등 의료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되어 「의료법」 위반 가능성이 상당하므로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9조 제3항에 따라 관할 지자체 및 수사기관에 이첩하기로 함

4 처리결과

- ○○시 ○○구: 피신고자의 무면허 의료행위 등 위법행위 확인되어 보건복지부에 행정처분 (간호사 자격정지) 의뢰
- ○○시경찰청: 피신고자의 이 사건 「의료법」 위반에 대하여 이미 기소유예 처분이 이뤄진 것으로 확인되어 입건 전 조사종결
-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기관의 조사결과를 수용하여 종결처리

5 적용법령

「의료법」 제27조, 제65조, 제87조의2

입찰 담합 관련 부당 공동행위

관계기관 송부(2022. 2. 9.)



1 신고내용

피신고자들은 장비기술사업, 플랜트사업, 통신기술사업을 영위하는 피신고업체의 공동대표들로, 피신고업체는 2015년부터 현재까지 ○○○의 SMSC(Short Massage Service Center) 발주 책임자 및 입찰업체와 담합하여 부당한 공동행위를 통해 입찰 및 수주를 진행하였고, ○○○가 지정한 업체인 (주)○○를 통해 PC, 노트북 등을 교차로 매입하였으며, 물품(주유비, 패딩점퍼)을 공사대금(안전관리비)으로 처리하여 제공한 혐의가 있음

2 검토결과

공정거래위원회 송부

3 송부이유

신고자가 제출한 기안서, 이마트 상품권 구입 영수증 등을 통해 피신고업체가 ○○○ 입찰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영업활동비 지원을 목적으로 입찰업체에 상품권을 지원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구매 품의서, 견적서, 발주서를 통해 피신고업체가 (주)○○를 통해 PC, 노트북 등을 구입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기안서를 통해 피신고업체가 ○○○에 주유비 및 패딩점퍼를 납품하고 안전관리비로 지급 처리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으로 미루어 피신고자들의 혐의를 배제하기도 어렵다고 판단 되므로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에 따라 해당 업무 지도·감독기관에 송부하기로 함

4 처리결과

- **공정거래위원회**: 피신고자들의 입찰담합 등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사실이 확인되어 피신고업체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73억 2,400만 원 부과
-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기관의 조사결과를 수용하여 종결처리

5 적용법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43조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등

2분과위원회(2022. 6. 24.) | 심사보호국장



1 신고내용

피신고자들은 소셜 데이팅 서비스 어플리케이션을 운영하며 회원가입 시 수집한 여성 회원들의 사진을 활용하여 허위의 여성 계정을 만들고, 이를 이용하여 게시글 및 남성회원의 댓글을 작성하도록 하는 등 남성회원들을 유혹하여 해당 회원들이 유료 아이템을 사용하도록 한 혐의가 있음

2 검토결과

공정거래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 이첩

3 이첩사유

제출된 사내 메신저에서 피신고자로 추정되는 자가 소속 직원들에게 허위 계정의 이용자를 만들어 활동하게 하는 것으로 보이는 게시글이 확인되는 점 등으로 미루어 신고내용에 적시된 피신고자들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등 위반 가능성이 상당해 보이므로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9조 제3항에 따라 해당 업무 지도·감독기관 및 수사기관에 이첩하기로 함

4 처리결과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피신고자들의 회원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등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하여 과징금 2억 2,400만 원 부과
- 공정거래위원회: 피신고자들의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확인되지 않음
-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기관의 조사결과를 수용하여 종결처리

5 적용법령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39조의15

제 4 장

신고자 보상·포상·구조



1. 부패신고자 보상·포상·구조
2. 공익신고자 보상·포상·구조



2024
부패·공익신고 및 보상 사례집

Anti-Corruption & Civil Rights Commission

제4장
신고자 보상·포상·구조

1

부패신고자 보상·포상·구조

01

「두루누리지원금 부정수급 신고 사건」 관련 보상금 신청(인용)

전원위원회(2024. 3. 4.) | 보상심의회위원회(2024. 2. 21.)



1 신청내용

신청인은 「두루누리지원금 부정수급 신고 사건」을 위원회에 신고한 후 보상금 지급을 신청함

2 검토결과

위 신고로 인하여 641여만 원의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등을 가져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8조제2항 및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3 심의내용

- 신청인은 피신고업체 원장인 피신고자가 실제 근무하지 않은 근로자를 상용직 근로자로 허위 등록을 하거나 자격 없는 프리랜서 직원을 근로계약 직원으로 근로계약을 허위로 작성 제출하여 두루누리지원금을 부정수급한 의혹이 있다고 위원회에 신고함
- 위 신고는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을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부패행위(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제4호나목) 신고로 인정됨
- 위 신고로 인하여 피신고자에게 641여만 원의 환수결정이 있었으며, 위 환수결정이 신고서에 구체적으로 적시된 내용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므로 보상금 지급사유가 존재함

4 결정결과

134여만 원의 보상금 지급 결정

5 적용법령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68조제2항 및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 제77조, 제81조

02

「스마트공장 구축사업비 등 부정수급 신고 사건」 관련 보상금 신청(인용)

전원위원회(2024. 3. 4.) | 보상심의위원회(2024. 2. 21.)



1 신청내용

신청인은 「스마트공장 구축사업비 등 부정수급 신고 사건」을 위원회에 신고한 후 보상금 지급을 신청함

2 검토결과

위 신고로 인하여 약 2억 원의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등을 가져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재정환수법’) 제23조제2항 및 제3항, 제2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20조, 제23조, 제25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3 심의내용

- 신청인은 자신이 임원으로 재직 중인 회사의 부설연구소가 14개의 정부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연구원 허위등록, 연구비 허위 청구 등의 방법으로 연구개발비를 부정수급한 의혹이 있다고 위원회에 신고함
- 위 신고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재정지급금을 과다하게 청구하였으므로 공공재정에 손해를 입히거나 이익을 얻는 공공재정 부정청구등 행위(공공재정환수법 제2조제6호가목) 대한 신고로 인정됨
- 위 신고로 인하여 피신고자에 대한 약 2억 원의 환수 처분으로 직접적인 공공기관의 수입회복이나 증대를 가져온 사실이 인정되나, 일부 감액사유를 적용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심의

4 결정결과

4,817여만 원의 보상금 지급 결정

5 적용법령

공공재정환수법 제23조제2항 및 제3항, 제2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20조, 제23조, 제25조

4

03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신고 사건」 관련 보상금 신청(인용)

전원위원회(2024. 4. 8.) | 보상심의위원회(2024. 3. 20.)



1 신청내용

신청인은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신고 사건」을 위원회에 신고한 후 보상금 지급을 신청함

2 검토결과

위 신고로 약 4억 7,000여만 원 상당의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를 가져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구 부패방지권익위법’)제68조제2항 및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 제77조, 제81조 등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3 심의내용

- 신청인은 피신고업체 대표인 피신고자1과 같은 회사 과제책임자인 피신고자2가 2014년에 개발 완료한 제품을 신규로 개발하겠다고 속이고, 기 개발된 제품의 기술내용으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기술개발사업에 선정되어 과제를 수행하였으며 다른 업체의 명의로 허위 세금 계산서 및 거래명세서를 작성하여 사업비를 집행하는 방법 등으로 연구개발비를 교부받아 편취한 의혹이 있다고 위원회에 신고함
- 피신고업체가 기 개발품으로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여 과제를 수행한 것을 확인하여 피신고업체 및 피신고자들에게 각 3년간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처분을 하고, 피신고업체에 부정수급액 약 4억 7,000여만 원 상당의 환수처분이 이루어져 보상금 지급사유가 존재함

4 결정결과

약 1억 원의 보상금 지급 결정

5 적용법령

구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68조제2항 및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 제77조, 제81조

04

「노인취업지원센터 지원금 부정수급 신고 사건」 관련 보상금 신청(인용)

전원위원회(2024. 5. 13.) | 보상심의위원회(2024. 4. 30.)



1 신청내용

신청인은 「노인취업지원센터 지원금 부정수급 신고 사건」을 위원회에 신고한 후 보상금 지급을 신청함

2 검토결과

위 신고로 인하여 1,411여만 원의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등을 가져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8조제2항 및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 제77조, 제81조 등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3 심의내용

- 신청인은 취업지원센터 대표자인 피신고자가 노인일자리 관련 보조금 사업을 수행하면서 취업지원센터를 통한 채용실적이 없음에도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의혹이 있다고 위원회에 신고함
- 위 신고는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을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부패행위(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제4호나목) 신고로 인정됨
- 위 신고로 인하여 피신고센터에 대한 1,129여만 원의 환수결정과 타 센터들에서 이루어진 재취업지원금 부정수령에 대한 282여만 원의 환수결정이 있었으며, 위 환수결정이 신고서에 구체적으로 적시된 내용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므로 보상금 지급사유가 존재함

4 결정결과

279여만 원의 보상금 지급 결정

5 적용법령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제4호, 제68조제2항 및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 제77조 및 제81조

4

05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지원금 부정수급 신고 사건」 관련 보상금 신청(인용)

전원위원회(2024. 7. 8.) | 보상심의위원회(2024. 6. 27.)



1 신청내용

신청인은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지원금 부정수급 신고 사건」을 위원회에 신고한 후 보상금 지급을 신청함

2 검토결과

위 신고로 인하여 6,840여만 원의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등을 가져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8조제2항 및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3 심의내용

- 신청인은 피신고업체의 실질적인 대표인 피신고자1이 피신고자2(피신고업체1 대표) 및 피신고자3(피신고업체2 대표) 명의로 2개의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에 각 참여 신청을 하였고, 기존에 근무 중인 직원의 원 소속을 서로 변경하여 신규 채용하는 것처럼 허위 신고하는 방법으로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지원금을 부정수급한 의혹이 있다고 위원회에 신고함
- 위 신고는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 · 관리 · 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을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부패행위(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제4호나목) 신고로 인정됨
- 위 신고로 인하여 피신고업체2에게 6,840여만 원의 환수결정이 있었으며, 위 환수결정이 신고서에 구체적으로 적시된 내용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므로 보상금 지급사유가 존재함

4 결정결과

2,052여만 원의 보상금 지급 결정

5 적용법령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제4호, 제68조제2항 및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 제77조 및 제81조

06

「교육환경개선사업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사건」 관련 보상금 신청(기각)

전원위원회(2024. 7. 8.) | 보상심의위원회(2024. 6. 27.)



1 신청내용

신청인은 「교육환경개선사업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사건」을 위원회에 신고한 후 보상금 지급을 신청함

2 검토결과

위 신고로 인하여 124여만 원의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등을 가져온 사실이 인정되나 산정 보상금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하였으므로 「부패방지권익위법」(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8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 제77조제4항 및 제81조 등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함

3 심의내용

- 신청인은 피신고센터의 대표 및 직원인 피신고자들이 교육환경개선사업 보조금 집행 기준을 위반하여 부당하게 강사료 및 교통비를 지급받은 의혹이 있다고 위원회에 신고함
- 위 신고로 인하여 피신고센터에 대한 124여만 원의 환수 처분으로 직접적인 공공기관의 수입회복이나 증대가 되었으나 일부 감액사유를 적용한 후 산정 보상금이 20만 원 이하이므로 보상금 기각 사유가 존재함

4 결정결과

기각: 산정 보상금 20만 원 이하

5 적용법령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제4호, 제68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 제77조 제4항 및 제81조

4

신고자 보상 · 포상 · 구조

07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신고 사건」 관련 보상금 신청(인용)

전원위원회(2024. 8. 12.) | 보상심의위원회(2024. 7. 25.)



1 신청내용

신청인은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신고 사건」을 위원회에 신고한 후 보상금 지급을 신청함

2 검토결과

위 신고로 인하여 약 1억 7,140여만 원의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등을 가져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구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8조제2항 및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 제77조, 제81조 등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3 심의내용

- 신청인은 제조업체의 대표인 피신고자가 기술개발사업 연구 과제를 수행하면서 이미 개발이 완료된 제품을 연구과제의 최종결과물로 허위 제출하는 방법으로 연구개발비를 편취한 의혹이 있다고 위원회에 신고함
- 위 신고는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을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부패행위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제4호나목) 신고로 인정됨
- 위 신고로 인하여 피신고업체에 대한 약 1억 7,140여만 원의 환수결정이 있었으며, 위 환수결정이 신고서에 구체적으로 적시된 내용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므로 보상금 지급사유가 존재함

4 결정결과

4,429여만 원의 보상금 지급 결정

5 적용법령

구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 제68조 제2항 및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 제77조 및 제81조

08

「공무원 유족연금 부정수급 신고 사건」 관련 보상금 신청(인용)

전원위원회(2024. 8. 12.) | 보상심의회위원회(2024. 7. 25.)



1 신청내용

신청인은 「공무원 유족연금 부정수급 신고 사건」을 위원회에 신고한 후 보상금 지급을 신청함

2 검토결과

위 신고로 인하여 9,007여만 원의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등을 가져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8조제2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3 심의내용

- 신청인은 피신고자가 공무원인 전 배우자가 순직한 후 다른 남성과 사실혼으로 재혼을 하고 이를 관계기관에 숨기는 방법으로 공무원 유족연금을 편취한 의혹이 있다고 위원회에 신고함
- 위 신고는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을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부패행위(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제4호나목) 신고로 인정됨
- 위 신고로 인하여 피신고자에게 부정수금액 9,007여만 원이 환수 및 부과 처분되었으며, 위 환수결정 등이 신고서에 구체적으로 적시된 내용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므로 보상금 지급 사유가 존재함

4 결정결과

2,702여만 원의 보상금 지급 결정

5 적용법령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68조제2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 제81조

09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 보조금 편취 신고 사건」 관련 보상금 신청(인용)

전원위원회(2024. 10. 14.) | 보상심의위원회(2024. 9. 24.)



1 신청내용

신청인은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 보조금 편취 신고 사건」을 위원회에 신고한 후 보상금 지급을 신청함

2 검토결과

위 신고로 인하여 약 6억 1,900여만 원의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를 가져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구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8조제2항 및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 제77조, 제81조 등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3 심의내용

- 신청인은 컨설팅 업체 실장 겸 실질적인 대표인 피신고자1과 시험기관의 대표인 피신고자2가 무료로 해외규격인증을 진행해 준다면 중소기업들을 설득한 후 실제 인증비용보다 최소 3배 ~ 19배 이상 부풀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의 보조금을 편취하였다고 위원회에 신고함
- A공단은 부정수급액 약 3억 5,883여만 원의 환수처분하였고, B연구원은 부정수급액 4,381여만 원의 환수처분을 하였으므로 보상금 지급사유가 존재함

4 결정결과

9,653만 원의 보상금 지급 결정

5 적용법령

구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68조제2항 및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 제77조, 제81조

10

「한부모가족지원금 등 부정수급 신고 사건」 관련 보상금 신청(인용)

전원위원회(2023. 12. 18.) | 보상심의위원회(2023. 12. 1.)



1 신청내용

신청인은 「한부모가족지원금 등 부정수급 신고 사건」을 위원회에 신고한 후 보상금 지급을 신청함

2 검토결과

위 신고로 인하여 1,331여만 원의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등을 가져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8조제2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3 심의내용

- 신청인은 피신고자들이 함께 거주하며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면서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소득을 숨기는 수법으로 한부모가족지원금 등을 부정수급한 의혹이 있다고 위원회에 신고함
- 위 신고는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을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부패행위(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제4호나목) 신고로 인정됨
- 위 신고로 인하여 피신고자들에게 1,331여만 원의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를 가져온 사실이 인정되나 환수금액이 결정보상금의 50%에 미치지 못하므로 일부 지급함

4 결정결과

199여만 원의 보상금 일부 지급 결정

5 적용법령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68조제2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 제81조

11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사건」 관련 보상금 신청(인용)

전원위원회(2024. 12. 9.) | 보상심의위원회(2024. 11. 18.)



1 신청내용

신청인은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사건」을 위원회에 신고한 후 보상금 지급을 신청함

2 검토결과

위 신고로 인하여 450여만 원의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등을 가져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8조제2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3 심의내용

- 신청인은 중소기업 대표인 피신고자가 중소기업 생산 제품의 마케팅을 지원하는 국가 지원 사업에 이종으로 참가하는 수법으로 국가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의혹이 있다고 위원회에 신고함
- 위 신고는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을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부패행위(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제4호나목) 신고로 인정됨
- 위 신고로 인하여 피신고자에게 부정수금액 180여만 원, 제재부가금 270여만 원이 환수 및 부과 처분되었으며, 위 환수결정 등이 신고서에 구체적으로 적시된 내용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므로 보상금 지급사유가 존재함

4 결정결과

135여만 원의 보상금 지급 결정

5 적용법령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68조제2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 제81조

12

「아동복지시설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사건」 관련 구조금 신청(인용)

전원위원회(2024. 12. 23.) | 보상심의위원회(2024. 12. 11.)



1 신청내용

신청인은 「아동복지시설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사건」을 위원회에 신고한 후 근무 차별 등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해 피신고시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청구하면서 발생한 변호사 선임비용을 구조금으로 신청함

2 검토결과

위 신고로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여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렸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은 후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신고와 비용 지출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8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에 따라 구조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3 심의내용

- 신청인은 「아동복지시설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사건」을 위원회에 신고함
- 신청인은 신고 후 직장 내 괴롭힘으로 공황발작, 불안, 불면 증상이 있어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적응장애’가 발생하였다는 소견을 받았고 공단에서 신청인의 신고과정에서 관리자와 갈등이 있었으며 불이익을 받고 적응장애가 발생하였다고 보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 점, 고용노동부도 실제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고 인정한 점, 법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 판결문에서도 ‘피신고자들의 가해행위가 신청인의 이 사건 신고에 기인한 것으로 보여 진다’고 적시하는 등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신고와 변호사 선임비용 지출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함

4 결정결과

구조금 432여만 원 지급 결정

5 적용법령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68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

4

신고자 보상 · 포상 · 구조

13

「관급 도로공사 부패행위 신고 사건」 관련 보상금 신청(인용)

전원위원회(2024. 12. 23.) | 보상심의위원회(2024. 12. 11.)



1 신청내용

신청인은 「관급 도로공사 부패행위 신고 사건」을 위원회에 신고한 후 보상금 지급을 신청함

2 검토결과

위 신고로 인하여 약 2억 3,148여만 원의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등을 가져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8조제2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3 심의내용

- 신청인은 관급 도로공사를 시공한 피신고자1, 2가 도로의 기초시설물인 보차도 경계석 등을 설치하며 규정에 따른 거푸집을 설치하지 않고 경계석만을 설치하는 방법 등으로 공사비를 편취한 의혹이 있다고 위원회에 신고함
- 위 신고는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 · 관리 · 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을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부패행위(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제4호나목) 신고로 인정됨
- 위 신고로 인하여 피신고자에게 부정수금액 4,399여만 원과 설계변경 금액 1억 8,749여만 원이 환수 등 처분되었으며, 위 환수결정 등이 신고서에 구체적으로 적시된 내용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므로 보상금 지급사유가 존재함

4 결정결과

5,629여만 원의 보상금 지급 결정

5 적용법령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68조제2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 제81조

제4장
신고자 보상·포상·구조

2

공익신고자 보상·포상·구조

14

「미허가 의료기기 제조 및 판매업체 신고 사건」 관련 보상금 신청(인용)

전문위원회(2024. 1. 8.) | 보상심의회위원회(2023. 12. 27.)



1 신청내용

신청인은 「미허가 의료기기 제조 및 판매업체 신고 사건」을 위원회에 신고한 후 보상금 지급을 신청함

2 검토결과

위 신고로 인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등을 가져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6조,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내지 제24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 하기로 결정함

3 심의내용

- 신청인은 의료기기를 제조하는 피신고업체가 생산허가를 취득하지 못한 지역에서 의료기기를 제조한 의혹이 있다며 위원회에 신고함
- 위 신고로 인하여 「체외진단의료기기법」 등의 위반 혐의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과징금 1억 3,000여만 원 상당을 부과 처분하였으나 과징금 부과근거 중 일부만 이 신고내용에 포함되었는바, 직접적 관련성이 인정되는 과징금 6,876여만 원을 보상대상가액으로 산정
-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하며 해당 신고와 국가의 수입회복 간 직접적인 관련성이 인정되어 보상금 지급 사유가 존재함

4 결정결과

1,147여만 원의 보상금 지급 결정

5 적용법령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 제26조, 제2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내지 제23조

15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비용 부정수급 신고 사건」 관련 보상금 신청(인용)

전원위원회(2024. 2. 5.) | 보상심의위원회(2024. 1. 25.)



1 신청내용

신청인은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비용 부정수급 신고 사건」을 위원회에 신고한 후 보상금 지급을 신청함

2 검토결과

위 신고로 1,900여만 원 상당의 직접적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를 가져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내지 제23조 등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3 심의내용

- 신청인은 피신고대학이 직업능력개발사업비용을 지원받으면서 이 사업 전담직원에게 이 신청 건 사업과 무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지원비용을 부정수급한 의혹이 있다고 위원회에 신고함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62조 위반으로 피신고대학에 대해 부정수금액 등 1,990여만 원의 환수처분이 이루어져 보상금 지급사유가 존재함

4 결정결과

390여만 원의 보상금 지급 결정

5 적용법령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 제26조, 제2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내지 제23조

4

16

「공공기관의 회계비리 등 신고 사건」 관련 구조금 신청(추가지급, 인용)

전원위원회(2024. 6. 10.) | 보상심의위원회(2024. 5. 28.)



1 신청내용

신청인은 「공공기관의 회계비리 등 신고 사건」을 위원회 등에 신고한 후 피신고기관으로부터 정신적 피해를 받아 병원 치료비용을 구조금으로 이미 지급받았으나, 병증이 악화되어 추가적인 병원 치료비용이 지출되었다면서 이를 구조금으로 지급해 달라고 신청함

2 검토결과

신청인의 육체적·정신적 병증이 악화된 것으로 보이고, 추가적인 병원 치료비용 지출과 이 사건 신고 간에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등에 따라 구조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3 심의내용

- 신청인은 공공기관의 회계비리 등 의혹을 위원회 등에 신고함
- 위 신고로 피신고기관으로부터 받은 신분상 불이익 등에 따른 병원 치료비용을 구조금으로 이미 지급받았으나, 그 후 병증이 악화되어 추가적인 통원치료비 및 입원치료비를 지출하였으므로 이를 구조금으로 지급해 달라고 다시 신청함
- 신청인의 추가적인 병원 치료비용과 이 사건 신고 간에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심의함

4 결정결과

통원치료비 776,000원, 입원치료비 6,673,000원, 합계 7,449,000원의 구조금 추가 지급 결정

5 적용법령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27조

17

「공공기관 출자기업 불량건축자재 사용 신고 사건」 관련 구조금 신청(인용)

전원위원회(2024. 8. 12.) | 보상심의위원회(2024. 7. 25.)



1 신청내용

신청인은 「공공기관 출자기업 불량건축자재 사용 신고 사건」을 기초자치단체에 신고한 후 피신고기관으로부터 신분상 불이익 등을 받았으며 이로 인해 지출한 정신과 치료비용, 노무사 및 변호사 수임료를 구조금으로 지급해 달라고 신청함

2 검토결과

신청인의 노무사 및 변호사 수임료와 이 사건 신고 간에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등에 따라 구조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3 심의내용

- 신청인은 공공기관 출자기업 불량건축자재 사용 의혹을 기초자치단체에 신고함
- 위 신고로 피신고기관으로부터 받은 신분상 불이익 등에 따른 정신과 치료비용, 노무사 및 변호사 수임료를 지출하였으므로 이를 구조금으로 지급해 달라고 신청함
- 신청인의 노무사 비용 및 형사절차 비용과 이 사건 신고 간에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심의함

4 결정결과

노무사비용 4,400,000원, 형사절차비용 800,000원, 합계 5,200,000원의 구조금 지급 결정

5 적용법령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27조

4

18

「특수관계인 회사에 대한 부당지원 신고 사건」 관련 보상금 신청(인용)

전원위원회(2024. 11. 11.) | 보상심의위원회(2024. 10. 30.)



1 신청내용

신청인은 「특수관계인 회사에 대한 부당지원 신고 사건」을 위원회에 신고한 후 보상금 지급을 신청함

2 검토결과

위 신고로 인하여 약 348억 7,000여만 원의 직접적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를 가져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내지 제23조 등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3 심의내용

- 신청인은 신발 제조를 발주 받아 해외생산법인들에게 생산물량을 배분하는 업체인 피신고자1이 해외생산법인들을 대상으로 원자재 납품을 대행하는 업체인 피신고자2에게 높은 구매대행 수수료를 지급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신고자2를 부당 지원한 의혹이 있다고 위원회에 신고함
- 위 신고로 인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피신고자1·2 등에 대하여 약 347억 7,000여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으며, 또한 법원은 피신고자1에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벌금 1억 원 선고하였음
- 이 신청 건은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지원행위로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공익 침해행위에 해당하며 해당 신고와 국가의 수입회복 간 직접적인 관련성이 인정되어 보상금 지급 사유가 존재함

4 결정결과

약 5억 3,386여만 원의 보상금 지급 결정

5 적용법령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 제26조, 제2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내지 제23조

19

「대지급금 부적정 지급 신고 사건」 관련 보상금 신청(인용)

전원위원회(2024.11.11.) | 보상심의위원회(2024.10.30.)



1 신청내용

신청인은 「대지급금 부적정 지급 신고 사건」을 감사원에 제보한 후 보상금 지급을 신청함

2 검토결과

위 제보로 인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4,572여만 원의 직접적인 수입 증대를 가져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내지 제23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3 심의내용

- 신청인은 공공기관이 대지급금 지급요건 중 사업주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는데도 위법·부당하게 대지급금을 지급한 사례가 있다고 감사원에 제보함
- 신청인의 신고내용은 「임금채권보장법」 위반으로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공익침해행위(「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에 해당함
- 위 신고로 인해 대지급금 부적정 지급액 4,572여만 원을 환수처분 하여 신고와 국가의 직접적인 수입 증대사이에 관련성이 인정되나 환수금액이 결정보상금의 50%를 초과하므로 환수된 금액만큼 일부 지급함

4 결정결과

898여만 원의 보상금 일부 지급 결정

5 적용법령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내지 제23조

4

「전기공사업법 위반 신고 사건」 관련 보상금 신청(인용)

전원위원회(2024. 12. 9.) | 보상심의회(2024. 11. 18.)



1 신청내용

신청인은 「전기공사업법 위반 신고 사건」을 위원회에 신고한 후 보상금 지급을 신청함

2 검토결과

위 신고로 인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300여만 원의 직접적인 수입 증대를 가져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6조,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내지 제24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3 심의내용

- 신청인은 피신고업체가 정상적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없는 페이퍼컴퍼니인데도 관급공사의 도급 및 재하도급을 하였고, 기술자를 고용하지 않고 자격증만 빌려 회사를 운영한 의혹이 있다고 위원회에 신고함
- 신청인의 신고내용은 「전기공사업법」 위반으로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공익침해행위(「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에 해당함
- 이 신고로 인해 피신고업체에 과징금 200여만 원 및 과태료 100만 원이 부과되고, 신고와 지방자치단체의 직접적인 수입 증대 사이에 관련성이 인정되어 보상금 지급사유가 존재함

4 결정결과

60여만 원의 보상금 지급 결정

5 적용법령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내지 제23조

제 5 장

참고자료



1. 부패·공익신고제도의 이해
 2. 부패·공익신고자 보호제도 및 보상제도
- [붙임]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 목록



2024
부패·공익신고 및 보상 사례집

Anti-Corruption & Civil Rights Commission

제5장
참고자료

1

부패·공익신고 제도의 이해

01

부패·공익신고 제도의 이해

가 부패신고 및 처리

Q 근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55조~제60조

Q 신고대상 : 부패행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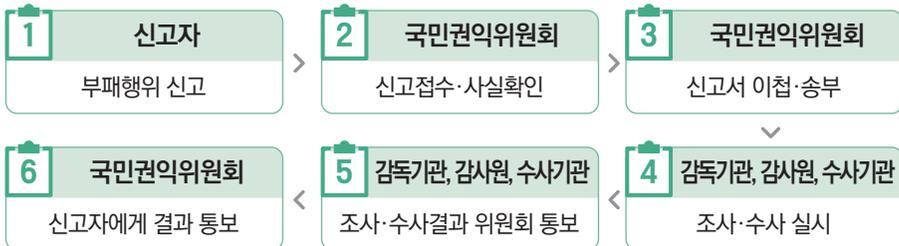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제4호

-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 위에서 규정한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Q 신고주체 및 방법

- (주체) 누구든지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에 부패행위 신고 가능
- (방법) 기명의 문서(신고자의 인적사항, 신고취지 및 이유, 신고대상 기재), 증거 첨부

국민권익위 부패행위 신고 처리 절차



※ 신고자는 신고 결과에 대해 국민권익위에 이의신청 가능

※ 국민권익위는 조사·수사 등이 충분하지 않으면 조사기관 등에 재조사·재수사 요구 가능

나 공익신고 및 처리

🔍 근거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 제6조~제10조

🔍 신고대상 : 공익침해행위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공익신고자 보호법」 별표에서 열거하고 있는 **495개**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의 벌칙 또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 신고주체 및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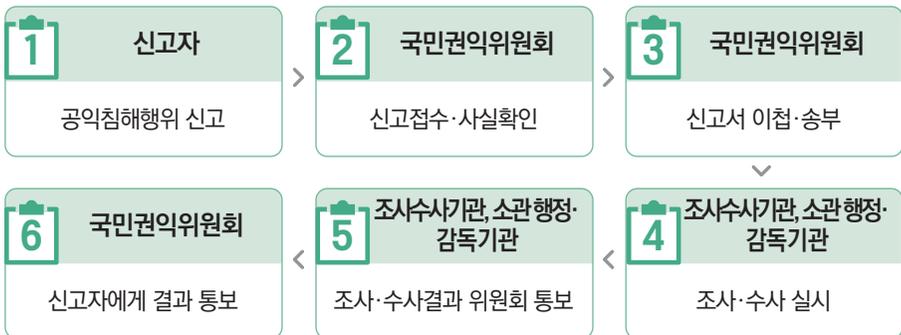
(주체) 누구든지 공익신고 기관에 공익침해행위 신고 가능

공익신고 대상 기관(「공익신고자 보호법」 제6조)

- 국민권익위원회
-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기관·단체·기업 등의 대표자 또는 사용자
-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소관 행정·감독기관
- 수사기관
- 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공사·공단 등의 공공단체
- 국회의원

(방법) 기명의 문서(신고자의 인적사항, 신고취지 및 이유, 신고대상 등 기재), 증거 첨부

국민권익위 공익침해행위 신고 처리 절차



※ 신고자는 신고 결과에 대해 국민권익위에 이의신청 가능

※ 국민권익위는 조사·수사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조사·수사 기관에 재조사·재수사 요구 가능

다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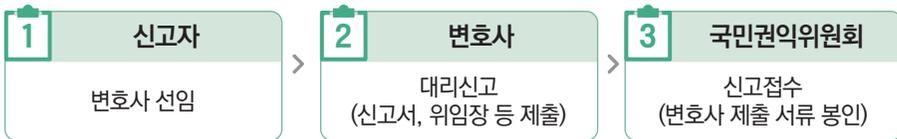
Q 근거

부패방지권익위법 제58조의2,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8조의2,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Q 주요 내용

- (개요) 신고자가 신고서에 본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않고, 대리인인 변호사의 이름만 밝혀 변호사로 하여금 신고를 대리하게 하는 제도
- (신고기관) 비실명 대리신고는 국민권익위원회로 한정
- (신고대상) 공익침해행위, 부패행위,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 부정청탁 및 금품등수수 행위, 공공재정에 대한 부정청구
- (신고방법) 변호사 이름으로 작성한 신고서, 증거자료와 함께 신고자의 인적사항, 신고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및 위임장을 국민권익위에 제출
 - ※ 신고자의 인적사항, 신고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및 위임장은 국민권익위에 봉인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국민권익위는 신고자 본인의 동의 없이 열람 불가
- (자문변호사단) 신분노출 및 불이익조치 우려가 높은 내부 신고자가 비용 부담 없이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단을 구성·운영

비실명 대리신고 절차



제5장
참고자료

2

부패·공익신고자
보호제도 및 보상제도

부패·공익신고자 보호제도 및 보상제도

가 신고자 보호제도

Q 비밀보장

- 누구든지 신고자나 협조자의 동의 없이 신고자·협조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협조자를 추정할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는 것을 금지(부패방지권익위법 제64조,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2조)
 - (부패신고)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5천만 원 이하 벌금
 - (공익신고)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5천만 원 이하 벌금
- 비밀보장 의무 위반에 대해 국민권익위는 신분공개 경위 확인, 위반자의 징계권자에게 징계 등 필요한 조치 요구 가능

Q 신변보호

- 신고로 인해 신고자, 협조자 또는 그 친족·동거인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 국민권익위가 관할 경찰서장 등에게 신변보호조치 요구(부패방지권익위법 제64조의2,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3조)
 - ※ (신변보호 사항) 특정시설에 보호, 신변 경호, 주거지에 대한 주기적 순찰 등

Q 책임감면

- 신고등과 관련하여 신고자나 협조자의 범죄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형이나 징계 등의 감면 또는 면제 가능(부패방지권익위법 제66조,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4조)
 - 국민권익위는 신고자등의 징계권자나 행정처분권자에게 징계나 처분의 감경 또는 면제요구, 요구를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따를 의무
- 신고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된 경우에도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직무상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

📌 불이익조치 금지

- 누구든지 신고자나 협조자에게 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 하는 것을 금지(부패방지 권익위법 제62조,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5조)
- 또한, 신고 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신고 등을 취소하도록 하는 행위 금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불이익 조치 유형

불이익 조치 유형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6호)	불이익조치시 형사처벌
①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신분상의 불이익 조치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원 이하의 벌금
②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그 밖에 부당한 인사조치 ③ 전보, 전근, 직무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④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의 차별과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⑤ 교육 또는 훈련 등 자기계발 기회의 취소, 예산 또는 인력 등 가용 자원의 제한 또는 제거, 보안정보 또는 비밀정보 사용의 정지 또는 취급 자격의 취소, 그 밖에 근무조건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차별 또는 조치 ⑥ 주의 대상자 명단 작성 또는 그 명단의 공개,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그 밖에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 ⑦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 또는 조사나 그 결과의 공개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원 이하의 벌금
⑧ 인허가 등의 취소, 그 밖에 행정적 불이익을 주는 행위 ⑨ 물품계약 또는 용역계약의 해지, 그 밖에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조치	보호조치는 권고 사항, 벌칙조항 없음

나 신고자 보상제도

보상금

- (지급대상) 국민권익위에 부패신고를 한 신고자(부패신고 보상금), 공익신고 기관에 공익신고를 한 내부 신고자(공익신고 보상금)
- (지급요건) 신고로 인해 직접적인 공공기관의 수입 회복·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경우(부패방지권익위법 제68조제2항,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6조)
- 보상금 지급사유

부패신고	공익신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몰수 또는 추징금 부과 • 국세 또는 지방세의 부과 • 손해배상·부당이득 반환 등에 의한 환수 • 벌금·과료·과징금·과태료의 부과와 통고처분 • 계약변경 등에 의한 비용절감 • 그 밖의 처분이나 판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벌칙 또는 통고 처분 • 몰수 또는 추징금 부과 • 과태료 또는 이행강제금 부과 • 손해배상·부당이득 반환 등의 판결 • 과징금의 부과 • 부담금·가산금 부과 등

- 보상금 지급금액

부패신고	공익신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상대상가액 구간별로 4~30% (상한 30억원, 하한 30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상대상가액 구간별로 4~30% (지급 한도액 폐지, 하한 30만원)

포상금

- (지급요건) 신고 등으로 인해 공공기관에 재산상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방지 또는 공익 증진을 가져온 경우 국민권익위 재량으로 지급(부패방지권익위법 제68조제1항,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6조의3)

- 포상금 지급사유 (지급 한도액 : 5억원)

부패신고	공익신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패행위자에 대하여 공소제기 · 기소유예 · 기소중지, 징계처분 및 시정조치 등 • 법령의 제정·개정 등 제도개선에 기여한 경우 • 신고에 의하여 신고와 관련된 정책 등의 개선 · 중단 또는 종료 등으로 공공기관의 재산상 손실을 방지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익침해행위를 한 자에 대해 기소유예, 형의 선고유예 · 집행유예, 형의 선고, 시정명령 등 특정한 행위 · 금지를 명하는 행정처분 • 공익침해행위 예방을 위한 관계 법령의 제 · 개정 등 제도개선에 기여한 경우 • 과태료 · 과징금 등의 부과처분이 있는 경우 • 재난의 예방 및 확산방지 등에 기여한 경우

구조금

- (지급대상) 신고자, 협조자, 그 친족 또는 동거인
- (지급요건) 신고등과 관련하여 육체적 · 정신적 피해 등을 받았거나 그 비용을 지출한 경우(부패방지권익위법 제68조제3항,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7조)
- 구조금 지급사유

- 육체적 · 정신적 치료 등에 소요된 비용
- 전직 · 파견 근무 등으로 소요된 이사 비용
- 원상회복 관련 소송 절차에 소요된 비용
- 불이익조치 기간의 임금 손실액
- 그 밖에 중대한 경제적 손해

붙임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 목록

시행령 별표 연번	분야 및 법률명
72개	〈건강〉
1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5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7	가축전염병 예방법
9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3	건강검진기본법
14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24	검역법
26	결핵예방법
39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48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49	공중위생관리법
64	국민건강보험법
65	국민건강증진법
68	국민영양관리법
77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104	노인복지법
105	노인장기요양보험법
108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110	농약관리법
117	담배사업법
14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144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별법
146	먹는물관리법
147	모자보건법
171	병원체자원의 수집·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연번	분야 및 법률명
172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173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187	비료관리법
192	사료관리법
214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217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33	소금산업 진흥법
247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253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60	식물방역법
261	식물신품종 보호법
262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263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264	식품산업진흥법
265	식품안전기본법
266	식품위생법
279	약사법
280	양곡관리법
282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311	위생용품 관리법
317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32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322	의료급여법
323	의료기기법
324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325	의료법
330	인삼산업법
331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335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346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연번	분야 및 법률명
383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388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389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392	종자산업법
408	지역보건법
414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422	청소년 보호법
432	축산물 위생관리법
437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446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450	학교급식법
451	학교보건법
477	혈액관리법
478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481	화장품법
490	환자안전법
491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129개	〈안 전〉
3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4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8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16	건설기계관리법
17	건설기술 진흥법
18	건설산업기본법
20	건축물관리법
22	건축법
23	건축사법
28	경비업법
33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42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연번	분야 및 법률명
43	공연법
51	공항시설법
53	광산안전법
54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55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56	교통안전법
57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61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73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74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82	궤도운송법
94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95	기계설비법
100	낚시 관리 및 육성법
111	농어촌도로 정비법
112	농어촌정비법
113	농업기계화 촉진법
116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127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128	도로교통법
129	도로법
130	도선법
132	도시가스사업법
136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137	도시철도법
141	동물보호법
142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174	보안관찰법
176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179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연번	분야 및 법률명
190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91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198	사회복지사업법
206	산업안전보건법
216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219	석면안전관리법
222	선박 및 해상구조물에 대한 위해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223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224	선박안전법
225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226	선박직원법
228	선원법
229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230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231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23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35	소방기본법
236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37	소방시설공사업법
238	소방장비관리법
243	송유관 안전관리법
251	수상레저안전법
252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254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55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258	승강기 안전관리법
259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271	아동복지법
273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77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별표 연번	분야 및 법률명
283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284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285	어선법
289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292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294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308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309	원자력안전법
310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
313	위험물안전관리법
315	유선 및 도선 사업법
338	자동차관리법
341	자연재해대책법
35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360	재난안전통신망법
363	재해구호법
364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365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368	전기공사사업법
369	전기사업법
370	전기안전관리법
371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375	전력기술관리법
381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385	정보통신공사사업법
391	제품안전기본법
396	주차장법
397	주택법
402	지뢰 등 특정 재래식무기 사용 및 이전의 규제에 관한 법률
409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연번	분야 및 법률명
410	지진·화산재해대책법
412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415	집단에너지사업법
416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419	철도안전법
420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424	청소년활동 진흥법
425	청원경찰법
426	체외진단의료기기법
427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429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431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436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442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452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458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459	항공보안법
461	항공안전법
462	항로표지법
463	항만법
466	해사안전기본법
467	해상교통안전법
468	해양경비법
469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480	화염병 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482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484	화학물질관리법
82개	〈환경〉
6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0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연번	분야 및 법률명
12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19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36	골재채취법
44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70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7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87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98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99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102	내수면어업법
115	농지법
120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121	대기환경보전법
126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13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135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38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149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51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155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56	물환경보전법
157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163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168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194	사방사업법
200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201	산림보호법
20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10	산지관리법
215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연번	분야 및 법률명
227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234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240	소음·진동관리법
242	소하천정비법
244	수도법
245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248	수산업법
249	수산자원관리법
256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257	습지보전법
270	실내공기질 관리법
276	약취방지법
278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81	양식산업발전법
286	어장관리법
287	어촌·어항법
293	연안관리법
295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301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302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304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329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340	자연공원법
340의2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342	자연환경보전법
343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345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367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390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411	지하수법

시행령 별표 연번	분야 및 법률명
430	초지법
439	토양환경보전법
443	폐기물관리법
444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448	하수도법
449	하천법
454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465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470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71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472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72의2	해양이용영향평가법
474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475	해양환경관리법
485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486	환경보전법
487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487의2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488	환경영향평가법
489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102개	〈소비자 이익〉
10의2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11	개인정보 보호법
15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21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25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30	계량에 관한 법률
32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34	고용보험법
37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연번	분야 및 법률명
46	공인중개사법
52	관광진흥법
58	국가기술자격법
85	근로복지기본법
88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90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92	금융지주회사법
109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114	농업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23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124	대외무역법
125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134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145	말산업 육성법
148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150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152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154	물류정책기본법
159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162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164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165	방송법
177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178	보험업법
181	복권 및 복권기금법
186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195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197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199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204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별표 연번	분야 및 법률명
205	산업디자인진흥법
20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9	산업표준화법
211	상표법
212	상호저축은행법
213	새마을금고법
220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221	석탄산업법
239	소비자기본법
241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246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50	수산종자산업육성법
267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268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269	신용협동조합법
274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75	아이돌봄 지원법
288	에너지법
290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291	여신전문금융업법
296	영유아보육법
298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299	예금자보호법
303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305	외국환거래법
306	외식산업 진흥법
307	우편법
312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314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316	유아교육법

시행령 별표 연번	분야 및 법률명
319	은행법
320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326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332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333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336	입양특례법
337	자격기본법
352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355	장애인복지법
372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373	전기통신기본법
374	전기통신사업법
376	전자금융거래법
377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378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379	전자서명법
380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386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38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395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398	중소기업은행법
407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413	직업안정법
418	철도사업법
433	축산법
435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440	통신비밀보호법
445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453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457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연번	분야 및 법률명
464	항만운송사업법
476	해운법
479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22개	〈공정한 경쟁〉
2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7	경륜·경정법
69	국민체육진흥법
72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107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118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119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14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183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203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318	유통산업발전법
328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33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366	저작권법
382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394	주민투표법
399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401	중증장애인생산물 우선구매 특별법
438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447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455	한국마사회법
460	항공사업법
88개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
29	경찰관 직무집행법
31	고등교육법
35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연번	분야 및 법률명
38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40	공공주택 특별법
41	공동주택관리법
45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47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50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59	국가보안법
60	국가재정법
62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63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6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67	국민연금법
71	국유재산법
75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78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79	군사기밀 보호법
80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81	군형법
83	귀속재산처리법
84	근로기준법
86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89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9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93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96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97	기초연금법
10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103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106	노후준비 지원법
122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연번	분야 및 법률명
13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139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153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158	민·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160	민방위기본법
161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66	방위사업법
167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169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170	병역법
175	보조금법
180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182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184	부정수표 단속법
185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188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189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193	사립학교법
196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208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218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272	아동수당법
297	영해 및 접속수역법
300	예비군법
327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334	임금채권보장법
344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347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348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349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별표 연번	분야 및 법률명
350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351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35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354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356	장애인연금법
357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358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361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362	재일교포 복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384	전파법
393	주거급여법
400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403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404	지방세기본법
405	지방자치단체 보조금법
406	지방재정법
417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421	청소년 기본법
423	청소년복지 지원법
428	초·중등교육법
434	출입국관리법
441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456	한부모가족지원법
473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483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이용안내

“ 신고는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을 이용하시고,
신고 전에 전화상담도 가능합니다. ”

우 편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세종청사 7동)
국민권익위원회 종합민원상담센터

팩 스 (044) 200-7972

인 터 넷 홈페이지 www.acrc.go.kr
청렴포털-부패공익신고 www.clean.go.kr

방 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세종청사 7동)
국민권익위원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길 60
정부서울청사 별관1층
국민권익위원회 정부합동민원센터

전 화 상 담 국번없이 1398



국민권익위원회

부패·공익 신고 및 보상 사례집 (제23집)

발행처 | 국민권익위원회

발행인 |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발행일 | 2025년 7월

본 부패·공익 신고 및 보상 사례집의 내용에 관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세종청사 7동)
국민권익위원회 심사기획과
Tel. 044)200-7688 Fax. 044)200-7943